

GLOBAL COPYRIGHT PROTECTION

PRIMARY ISSUES

미국	美 국제불법복제방지의원총회(CIAPC), 2011년 저작권 침해 감시대상국 리스트 발표	12
	PayPal社, 전자결제 서비스상의 불법저작물 판매 계정 폐쇄	15
	美 의회에산청, 「Protect IP」 법안 시행에 5년간 약 4,700만 달러 비용 추정	17
일본	日, 보컬로이드 음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부분신작 관리기구 설립	32
	日 크로스워크프社, 유료 P2P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 감시 확대	41
	日, 동영상 사이트를 통한 불법 음악파일 다운로드 年 12억 건	43
중국	中, 바이두社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온라인 침해 근절 운동 확산	56
	中, '제7차 검망행동(劍網行動)'에서 저작권 침해사건 처리실적 역대 최대	66
	中, 오프라인 불법저작물 단속 성과 및 10대 저작권 침해사건 발표	70
유럽	獨, 대규모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키노' 폐쇄	74
	英, 불법 DVD 제조업자 5명에 총 7년 10개월의 징역형 선고	76
	佛 하도피, 삼진아웃제의 운영 성과에 대한 통계자료 발표	86
국제기구	국제상공회의소, 저작권 침해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발표	94
	WIPO, 공연권 보호 국제조약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의 2012년 개최	99



GLOBAL COPYRIGHT PROTECTION

PRIMARY ISSUES

미국	美 국제불법복제방지의원총회(CIAPC), 2011년 저작권 침해 감시대상국 리스트 발표	12
	PayPal社, 전자결제 서비스상의 불법저작물 판매 계정 폐쇄	15
	美 의회에산청, 「Protect IP」 법안 시행에 5년간 약 4,700만 달러 비용 추정	17
일본	日, 보컬로이드 음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부분신탁 관리기구 설립	32
	日 크로스워크社, 유료 P2P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 감시 확대	41
	日, 동영상 사이트를 통한 불법 음악파일 다운로드 年 12억 건	43
중국	中, 바이두社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온라인 침해 근절 운동 확산	56
	中, '제7차 검망행동(劍網行動)'에서 저작권 침해사건 처리실적 역대 최대	66
	中, 오프라인 불법저작물 단속 성과 및 10대 저작권 침해사건 발표	70
유럽	獨, 대규모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키노' 폐쇄	74
	英, 불법 DVD 제조업자 5명에 총 7년 10개월의 징역형 선고	76
	佛 하도피, 삼진아웃제의 운영 성과에 대한 통계자료 발표	86
국제기구	국제상공회의소, 저작권 침해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발표	94
	WIPO, 공연권 보호 국제조약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의 2012년 개최	99





GLOBAL COPYRIGHT PROTECTIO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미국 | USA

- * 美무역대표부, 국가별 저작권 보호현황에 대한 무역장벽보고서 발표8
- * 美무역대표부,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에서 한국 3년 연속 제외10
- * 美 국제불법복제방지의원총회(CIAPC), 2011년 저작권 침해 감시대상국 리스트 발표12
- * PayPal社, 전자결제 서비스상의 불법저작물 판매 계정 폐쇄15
- * 美 의회에산청, 「Protect IP」 법안 시행에 5년간 약 4,700만 달러 비용 추정17
- * 美 법원, 저작권 침해 도메인 압류에 대한 스페인 회사의 항고 기각19
- * 美 저작권청, 케이블 및 위성방송 법정허락의 단계적 삭제방안 제시21



일본 | JAPAN

- * 日, 스포츠 업계의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개시26
- * 日, SW를 이용한 지상파 방송 라이선스 방식 도입 예정28
- * 日 게임업체, 게임 실연 동영상 유출에 적극적 대응 의사 표명30
- * 日, 보컬로이드 음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부분신탁 관리기구 설립32
- * 日 BSA 사무국, SW 저작권 보호를 위한 e러닝 서비스 제공36
- * 日, 웹스토리지에 불법 업로드 한 미성년자 6명 불구속 송치38
- * 日, 초고화질 영상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 개발39
- * 日 크로스워크프社, 유료 P2P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 감시 확대41
- * 日, 동영상 사이트를 통한 불법 음악파일 다운로드 年 12억 건43
- * 日 출판유통대책협의회, 전자서적에 대한 출판사의 저작권접권 부여 요청45



중국 | CHINA

- * 영화 ‘양자탄비’, 온·오프라인 상 적극적 불법저작물 단속활동으로 흥행 기여52
- * 중국정부, 2010년 지재권 보호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54
- * 中, 바이두社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온라인 침해 근절 운동 확산56
- * 상하이시, 온라인 불법저작물 단속활동 ‘검망행동(劍網行動)’ 실시59
- * 中, 세계 최초로 저작권 자산평가 기준 발표61
- * 북경시 판권국, ISP에 업로더 정보를 1년간 보관하도록 규정63

- * 中, '제7차 검망행동(劍網行動)'에서 저작권 침해사건 처리실적 역대 최대65
- * 상하이 교통대학교, 인터넷 저작권 침해소송 분석보고서 발표67
- * 中 칭다오市, 저작권 모범 도시로 지정68
- * 中, 오프라인 불법저작물 단속 성과 및 10대 저작권 침해사건 발표70
- * 中 칭다오市, 저작권 모범도시로 지정72



유럽 | EUROPE

- ** 獨, 대규모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키노' 폐쇄76
- * 英, 불법 DVD 제조업자 5명에 총 7년 10개월의 징역형 선고78
- * 英 저작권자들, 불법저작물 삭제를 위한 전문가 기구 설립 제안80
- * 佛 하도피, 삼진아웃제의 운영 성과에 대한 통계자료 발표87
- * EU, 녹음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확대89
- * 유럽사법재판소, 해외 방송사를 통한 영국 프리미어리그 시청 허용91



국제기구 |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 국제상공회의소, 저작권 침해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발표96
- * WIPO, 서아프리카 국가들을 위한 온라인 음악저작권 관리시스템 구축계획 발표99
- * WIPO, 공연권 관련 국제조약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2012년 개최101



ZOOM-IN

- * 미국 디지털밀리터리저작권법(DMCA) 상 UCC 삭제통지의 남용을 막기 위한 요건106
- * 유튜브의 '저작권 보호', 기업과 저작권자 간 상생의 교훈 삼아야112
- * 저작권 침해를 노리는 트롤(troll)의 등장에 따른 해외 대응115
- * 중국 내 한국 방송콘텐츠 저작권 침해 원인과 대응방안120
- *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본 저작권 보호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124
- * 미국의 '저작권 경고 시스템' - 또 하나의 삼진아웃제?129
- * 한·EU FTA 발효가 저작권 보호에 미치는 득과 실134
- * EU차원의 저작물 보호체계가 시사하는 전략적 대응점138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북미 지역 미국

美무역대표부, 국가별 저작권 보호현황에 대한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8
美무역대표부,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에서 한국 3년 연속 제외	10
美 국제불법복제방지의원총회(CIAPC), 2011년 저작권 침해 감시대상국 리스트 발표	12
PayPal社, 전자결제 서비스상의 불법저작물 판매 계정 폐쇄	15
美 의회에산청, 「Protect IP」 법안 시행에 5년간 약 4,700만 달러 비용 추정	17
美 법원, 저작권 침해 도메인 압류에 대한 스페인 회사의 항고 기각	19
美 저작권청, 케이블 및 위성방송 법정허락의 단계적 삭제방안 제시	21



美무역대표부, 국가별 저작권 보호현황에 대한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미국무역대표부는 2011년 3월 30일 총 62개국의 지재권 보호수준을 평가한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함. 동 보고서는 한국의 지재권 보호수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로써 올해 4월 말 발표되는 미국무역대표부의 지재권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한국이 3년 연속 제외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美무역대표부, 지재권 감시대상국 선정을 위한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 미국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11년 3월 30일,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를 발표함.
- 무역장벽보고서(NTE)는 한국을 포함, 총 62개국의 지재권 보호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2011년 4월 말 발표되는 지재권 감시대상국 선정의 중요 기초자료로 활용되게 됨.

무역장벽보고서, 한국의 지재권 보호수준에 대해 긍정적 평가

- 이번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강력한 지재권 보호 노력의 결과로써 2009년부터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정부의 노력이 한국을 주요 지재권 국가로 변모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함.
- 이와 더불어 2010년 11월 타결된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협상과정에서의 한국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인정하고 있음.
- 또한, 한국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는 파일공유사이트에 대해 기소로 이어졌다고 밝힘.

- 다만, 신종 온라인 침해와 기업 내 SW 침해, 대학가 서적 불법복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된다고 덧붙이고 있음.
- o 동 보고서는 한국의 전반적인 지재권 보호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에 올해 4월 말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지재권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한국이 3년 연속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됨.
- o 한편, 캐나다에 대해서는 국경에서의 단속을 강화할 것과 「WIPO 인터넷 조약」의 성실한 이행 및 저작권법의 강화를 촉구함.
 - ※ 「WIPO 인터넷 조약」은 온라인 상 저작물 이용에 대한 국제 규정임.
- o 중국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SW·출판 분야 및 온라인 상에서 심각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매우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그 개선책으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금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함.

캐나다, 중국 등
주요 침해국에 대한
저작권 보호 노력
촉구

(USTR, 2011.3.30)



美무역대표부,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에서 한국 3년 연속 제외

미국무역대표부는 2011년 5월 3일(한국시간 기준) '2011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1 Special 301 Report)'를 통해 주요 교역국의 지재권 보호수준 평가결과를 발표함. 동 보고서는 우선감시대상국에 중국, 캐나다 등 12개국, 감시대상국에 브라질, 이탈리아 등 29개국을 지정했으며 한국은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음

美무역대표부, 각국의 지재권 보호수준을 평가한 '2011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 o 미국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11년 5월 3일 새벽(한국시간 기준), 77개국의 지재권 보호수준에 대한 '2011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1 Special 301 Report)'를 발표하였음.
 - ※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미국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제182조에 의거, 미국무역대표부가 지재권 관련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주요 교역국의 지재권 보호수준을 평가하는 연례보고서임.
- o 동 보고서는 미국의 지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 및 306조 감시대상국(Section 306 Monitoring)으로 분류하고 있음.
 - 상기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정되면 직접적인 보복조치를 받지 않으나 지재권 보호여부에 대한 미국의 감시대상이 됨.
 - ※ 306조 감시대상국은 미국과의 지재권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분류로써,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관행을 검토한 후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한국, 3년 연속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에서 제외

- 이번 보고서는 우선감시대상국에 중국, 캐나다, 러시아,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칠레 등 12개국을, 감시대상국에 그리스, 멕시코, 브라질,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 페루, 핀란드, 필리핀 등 29개국을 지정하고 있음.
 - 파라과이는 306조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됨.

〈표〉 2011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지정 감시대상국 현황

구분	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 (watch list)	
국가명	중국	벨라루스	레바논
	러시아	볼리비아	말레이시아
	알제리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루나이	노르웨이
	캐나다	콜롬비아	페루
	칠레	코스타리카	필리핀
	인도	도미니카공화국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스페인
	이스라엘*	이집트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핀란드	터키
	태국	그리스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자메이카	베트남
	쿠웨이트		
합계	12개국	29개국	

※ *은 2011년에 신규 추가된 국가를 의미함

- 한편, 한국은 스페셜 301조 보고서가 최초 발표된 1989년부터 2008년까지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어 왔으나, 2009년부터 3년 연속으로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음.
 - 이는 지재권 보호를 위해 법 집행을 강화하고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에 적극 참가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 노력이 이루어낸 성과로 분석됨.

(USTR Special 301 Report, 2011.5.2)

(USTR NTE Report, 2011.3.30)



美 국제불법복제방지의원총회(CIAPC), 2011년 저작권 침해 감시대상국 리스트 발표

미국의 국제불법복제방지의원총회(CIAPC)는 지난 5월 26일, 2011년도 저작권 침해 감시대상국 리스트(2011 Country Watch List)를 발표함. 동 기관이 매년 발표하는 감시대상국 리스트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스페셜 301조와는 달리 저작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올해에는 캐나다와 중국, 러시아, 스페인, 우크라이나 5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음.

美 국제불법복제방지의원총회(CIAPC), 2011년 저작권 침해 감시대상국 리스트 발표

- 미국의 국제불법복제방지의원총회(The Congressional International Anti-Piracy Caucus; 이하 CIAPC)는 2011년 5월 26일,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2011년도 저작권 침해 감시대상국 리스트(2011 Country Watch List)를 발표함.
- CIAPC는 상·하원을 모두 포괄하는 초당적인 성격을 갖고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임.
 - 현재 미국의 쉘던 화이트하우스(Sheldon Whitehouse) 상원의원, 오린 해치(Orrin G. Hatch) 상원의원, 밥 굿래트(Bob Goodlatte) 하원의원, 애덤 쉬프(Adam B. Schiff) 하원의원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음.
- 동 기관이 매년 발표하는 이번 감시대상국 리스트는 지적재산권 전 분야를 다루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스페셜 301조와는 달리 저작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연방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CIAPC는 이번 발표를 통해 감시대상국에 지정된 국가들에게는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미국정부에게는 저작권 침해국에 대한 적절한 압력 행사를 촉구함.

감시대상국으로
캐나다, 중국,
러시아, 스페인,
우크라이나 지정

- 이번 2011년도에는 캐나다와 중국, 러시아, 스페인, 우크라이나 5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음.
 - ※ 2010년도 감시대상국은 캐나다와 중국, 러시아, 스페인으로, 올해 우크라이나가 신규 지정됨.
- CIACP는 상기 국가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① 캐나다

-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조장하거나 장려하는 경우 캐나다법에 의해 처벌 되도록 할 것
- 인터넷상의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재할 것
- 불법복제는 위법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령상에 확실히 규정할 것
-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 및 우회하는 장치의 거래를 금할 것
- 저작권 침해물의 국제간 거래를 막기 위해 국경에서의 단속을 강화할 것(담당 공무원에게 저작권 침해물의 압수권한 부여 등)

② 중국

-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규정 마련을 위해, 미중상업무역공동위원회(U.S.-China Joint Commission on Commerce and Trade; JCCT)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
- 불법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의 사업 면허를 박탈할 것
- 지속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업자에게 강력한 행정적·형사적 조치를 취할 것
- 음악물, 영상물, 출판물 시장 접근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지침 및 결정사항을 따를 것
- 미국 회사들의 중국시장 접근을 원활히 하고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적 검열을 폐지할 것(제조 및 유통과정에서의 외국 투자기업 참여를 허용, 가정용 콘솔게임기 판매금지 조치 해제 등)

- 해외 지적재산권자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하는 중국의 ‘자국 혁신(indigenous innovation)’ 정책을 폐지할 것

③ 러시아

-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페널티(penalty)를 부과할 것
- 저작권자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불법복제 방지협력 강화를 위해 민법을 개정할 것
- 저작권 침해행위 모니터링 및 수사를 위해 통일된 프로세스를 수립할 것
-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적 규제와 형사처벌 강화를 위해 법을 개정할 것

④ 스페인

- P2P 방식에 의한 저작물 공유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할 것
- 불법저작물에 접근을 허용하는 링크 사용을 막을 것
- 저작권자가 민사소송 목적으로 침해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소송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
- 사적복제에 대한 저작권 제한규정과 관련, 불법저작물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영리 목적(aim of profit)’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것

⑤ 우크라이나

- 불법저작물을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형사 소추를 인정할 것
- 불법저작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폐쇄할 것
-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 및 통신법을 개정할 것(극장에서 불법 도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인터넷상의 침해방지를 위해 협력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

(CIAPC 2011 Country Watch List, 2011.5.26)



PayPal社, 전자결제 서비스상의 불법저작물 판매 계정 폐쇄

페이팔(PayPal)社は 미국의 영화협회(MPA)와 공조 하에 자사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해 불법저작물을 거래한 인터넷 판매자들의 계정 수십 개를 2011년 6월 22일에 영구적으로 폐쇄조치하였음. 이번 조치결과, 상당수의 불법저작물 판매자들이 중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페이팔社, 미국 영화협회와 공조하여 불법저작물 거래 계정 폐쇄

- 온라인상에서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팔(PayPal)社は 자사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해 불법저작물을 거래한 인터넷 판매자들의 계정 수십 개를 2011년 6월 22일에 영구적으로 폐쇄조치함.
 - ※ 페이팔(PayPal)社は 이베이(eBay)社の 자회사이며 세계 25개국의 통화를 이용, 190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9,400만 개 이상의 계정을 보유하고 있음. 이 회사의 오픈 결제 플랫폼인 '페이팔 X(PayPal X)'는 다양한 플랫폼과 장치에 적용되며, 페이팔의 본사는 미국 새너제이에, 국제 본부는 싱가포르에 위치함.
- 이번 성과는 3개월 이상에 걸쳐 미국의 영화협회 아·태지부(Motion Picture Association Asia Pacific; MPA)와 페이팔社의 브랜드위험관리부(Brand Risk Management department) 조사관들이 협력하여 이룬 것임.
 - 미국의 영화협회는 불법복제 DVD 판매자들을 선별해내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상당수의 불법저작물 판매자들이 중국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힘.
 - ※ 미국의 영화협회(MPA)는 미국의 주요 영화사들이 자신들의 이익 대변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 전 세계 14곳에 지부를 두고 있음. 본사는 로스앤젤레스에, 아·태지부는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음. 회원사로는 파라마운트 픽처스(Paramount Pictures)社,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Sony Pictures Entertainment)社, 20세기 폭스(Twentieth Century Fox)社, 유니버설 스튜디오(Universal Studios)社, 월트디즈니(Walt Disney)社, 워너브러더스(Warner Bros.)社 등이 있음.

저작권 보호를 위해
불법복제방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 운영

- 페이팔社は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상품이 거래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이용규정과 권리자들을 위한 침해금지청구 절차를 두고 있음.
- 또한, 불법복제방지 프로그램(anti-counterfeit program)을 통해 판매자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이메일(aupviolations@paypal.com)로 불법저작물 판매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있음.
 - 접수된 신고는 페이팔社の 운영팀에 의해 24시간 내에 검토됨.
- 페이팔社の 줄리 베인브리지(Julie Bainbrige) 브랜드위험관리부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미국의 영화협회와 협력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겠다고 밝힘.

(MPA Press Release, 2011.6.22)

Global Copyright Protection

USA



美 의회예산청, 「Protect IP」 법안 시행에 5년간 약 4,700만 달러 비용 추정

미국 의회예산청은 「지적재산권보호법안(Protect IP Act)」을 시행할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약 4,70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2011년 8월 16일에 발표함. 의회예산청은 「Protect IP」 법안의 시행을 위해 인건비, 보상금(benefits), 교육비, 장비 구입비 및 지원비(support cost)가 필요하며 이 중 인건비에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힘

美 의회예산청, 「Protect IP」 법안 시행을 위한 예산안 발표

- 미국 의회예산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은 올해 상원사법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를 통과한 지적재산권보호법안(Preventing Real Online Threats to Economic Creativity and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11, 이하 「Protect IP」 법안)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추정액을 2011년 8월 16일에 발표하였음.
 - 이와 더불어, 의회예산청은 「Protect IP」 법안이 페이고(pay-as-you-go; PAYGO) 준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힘.
 - ※ 페이고(PAYGO) 준칙은 세입 감소 또는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하는 입법 시 반드시 이에 대응되는 세입 증가나 다른 재정지출 감소 등의 재원대책이 의무적으로 마련되도록 함으로써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쇄되도록 하는 재정 준칙을 말함.
- 「Protect IP」 법안은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법무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행위와 관련 있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결제대행업체, 광고업체 및 인터넷 검색엔진 등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동 법안이 시행되면 법무부는 저작권 침해관련 도메인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들은 결제대행업체, 광고업체 등이 저작권 침해사이트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한편 도메인에 대한 소송과 관련, 법원의 명령을 받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결제대행업체, 광고업체 등은 침해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효과적인 침해 예방책을 마련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함.

**「Protect IP」 법안을
위해 5년간 약
4,700만 달러 예산
소요**

- o 의회예산청은 「Protect IP」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약 4,7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힘.

〈표〉 「Protect IP」 법안 시행에 따른 예산 소요액 추정치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 - 2016
예산 소요액	7	8	10	11	11	47

- o 의회예산청은 「Protect IP」 법안의 시행을 위해 인건비, 보상금(benefits), 교육비, 장비 구입비 및 지원비(support cost)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1년에 약 1,00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이 중 인건비에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함.
 - 법무부는 이 법안 하에서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거나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사인력이 필요하며, 22명의 특수요원(special agents)과 26명의 지원 스태프(support staff)를 고용해야 할 것으로 추정함.
 - ※ 의회예산청은 2014년까지 법무부의 수요인원이 모두 고용된 것을 가정하여 예산 소요액을 추정하였으며, 해당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함.

(CBO, 2011.8.16.)

Global Copyright Protection

USA



美 법원, 저작권 침해 도메인 압류에 대한 스페인 회사의 항고 기각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011년 2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한 스페인 회사 푸에르토 80(Puerto 80)사의 도메인 2개를 압류하였음. 푸에르토 80사는 압류 해제를 위해 미국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2011년 8월 5일 미국 법원은 기각명령을 내림. 이에 도메인의 압류는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푸에르토 80사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미국 법원은 9월 2일까지 양측의 의견을 접수할 예정임

美 이민세관단속국,
저작권을 침해한
스페인 회사의
도메인 압류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U.S Immigration and Custom Enforcement; ICE)은 2010년부터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도메인을 압류해왔으며, 2011년 2월에는 스페인 회사 푸에르토 80(Puerto 80)사의 도메인 2개(Rojadirecta.com, Rojadirecta.org)를 압류하였음.

- 당시 푸에르토 80사는 상기 도메인을 통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방문자들이 스포츠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11년 6월 13일 푸에르토 80사는 도메인의 압류 해제를 위해 미국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2011년 8월 5일 법원은 기각명령을 내렸고, 이에 푸에르토 80사는 소송을 제기하게 됨.

- 푸에르토 80사는 도메인의 압류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자사의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도메인 압류에 대한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 확산

- 한편 해당 도메인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스페인 법원의 기존 판결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단순히 저작권 침해와 연관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도메인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 특히, EFF¹⁾ 등의 단체들이 언론의 자유 침해문제를 이유로 미국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였음.
- o 이러한 도메인 압류 조치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원은 2011년 8월 29일까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답변서를, 9월 2일까지 푸에르토 80社의 반론서를 접수할 예정임.

※ 참조

www.eff.org/files/RojadirectaOrder.pdf

<http://www.eff.org/deeplinks/2011/08/court-refuses-give-seized-domain-name-back-claims>
2011.8.25

www.copenhype.com/2011/08/rojadirecta-barking-up-the-wrong-tree 2011.8.25

1)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USA



美 저작권청, 케이블 및 위성방송 법정허락의 단계적 삭제방안 제시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011년 8월 29일, 「2010 위성텔레비전 확장 및 지역주의에 관한 법률(STELA)」 제302조에 따라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11조, 제119조 및 제122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정허락(statutory license)에 대한 시장 대안 보고서(report on marketplace alternatives)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위 법 규정을 단계적으로 삭제할 것을 권고함.

美 저작권청, 케이블
및 위성방송 법정
허락에 대한 보고서
발표

- 「2010 위성텔레비전 확장 및 지역주의에 관한 법률(Satellite Television Extension and Localism Act; STELA)」 제302조에 따라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법정허락(statutory license)에 관한 연방저작권법 제111조, 제119조 및 제122조의 삭제와 관련한 입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에 관한 권고 보고서를 미국 연방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이에, 2011년 8월 29일 저작권청은 STELA 제302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111조, 제119조 및 제122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정허락(statutory license)에 대한 시장 대안 보고서(report on marketplace alternatives)²⁾를 발표함.
 - 이 보고서는 법정허락 분야의 시장 수요 발생과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위 법 규정을 단계적으로 삭제(phase-out)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미국 저작권법(Copyright Act of 1976) 제111조, 제119조 및 제122조

① 저작권법 제111조(1976년)

- 케이블사업자(cable operator)가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방송국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1차 송신을 가입자에게 재전송(retransmission) 할 경우 법정허락의 대상이 됨.

2) Study Recommends Phase-Out Options for the Cable and Satellite Statutory Licenses in the Copyright Act.

② 저작권법 제119조(1998년)

- 위성사업자(satellite carrier)가 비네트워크(non-network) 및 네트워크(network) 텔레비전 방송국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1차 송신을 가입자의 가정용 시청을 위해 2차 송신을 하는 경우 법정허락의 대상이 됨.

③ 저작권법 제122조(1999년)

- 위성사업자(satellite carrier)가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1차 송신을 해당 지역 방송국에 재전송하는 경우 법정허락의 대상이 됨.

원거리신호 라이선스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기한 설정 권고

- 이 보고서는 방송사업자가 소비자 요구를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시장의 다양한 라이선싱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함.
 - 현재 서브 라이선싱(sublicensing), 집합적 라이선싱(collective licensing) 또는 직접 라이선싱(direct licensing)에 기초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대안 개발이 필요함.
- 미국 저작권청은 미국 연방하원이 원거리신호 라이선스(distant-signal license)의 폐지를 위한 기한을 정하고, 지역신호 라이선스(local-signal license)의 폐지는 다음 기회로 남겨둘 것을 권고함.
 -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해 이해관계자는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미국 연방하원은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신호 라이선스(local-signal license)를 다룰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을 얻게 됨.
- 이 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따라 미국 연방하원이 원거리신호 라이선스(distant-signal license)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개시일자 및 잠정기간을 결정하기 전 방송 프로그램 유통경로(distribution chain) 상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의 여부를 평가해야 함.

- 보고서는 미국 연방하원이 원거리신호 라이선스(distant-signal license) 종료일(sunset date)을 선정하는데 있어 방송국이 방송신호(broadcast signal)를 통해 전달된 모든 콘텐츠의 재전송에 필요한 권한을 획득한 경우, 케이블사업자(cable operator)와 위성사업자(satellite carrier)가 해당 방송국과 협상할 수 있도록 잠정기간을 충분히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U.S. Copyright Office, 2011.10.29.)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아시아 지역 일본

日, 스포츠 업계의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개시	26
日, SW를 이용한 지상파 방송 라이선스 방식 도입 예정	28
日 게임업체, 게임 실연 동영상 유출에 적극적 대응 의사 표명	30
日, 보컬로이드 음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부분신탁 관리기구 설립	32
日 BSA 사무국, SW 저작권 보호를 위한 e러닝 서비스 제공	36
日, 웹스토리지에 불법 업로드 한 미성년자 6명 불구속 송치	38
日, 초고화질 영상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 개발	39
日 크로스워크社, 유료 P2P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 감시 확대	41
日, 동영상 사이트를 통한 불법 음악파일 다운로드 年 12억 건	43
日 출판유통대책협의회, 전자서적에 대한 출판사의 저작권접권 부여 요청	45



日, 스포츠 업계의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개시

(사)일본음악저작권협회는 (사)일본피트니스산업협회와의 협의 하에 일본 문화청 장관에게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제출함. 본 규정에 따라 2011년 4월 1일부터 피트니스 클럽과 에어로빅 학원, 수영장 등의 스포츠 관련업계에서 영업상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물 이용료를 지불해야 함

日, 2000년 1월 녹음물 공연에 대한 저작권 제한규정 폐지

- 1970년에 개정된 일본 저작권법은 영리적 목적의 녹음물 공연과 관련, 커피숍이나 댄스홀, 댄스교실, 연극 등의 일부 저작물 이용형태에 한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당시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실연이든 녹음물 공연이든 상관없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본은 저작권법 개정시의 상황을 감안하여 이들 특정 이용형태 이외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그러나, 2000년 1월에 해당 제한규정(저작권법 부칙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이 폐지되면서 음악저작물이 영업상 이용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저작권 행사가 가능해짐.

2011년 4월부터 피트니스클럽 등 스포츠 관련업계에 대해 저작물 이용료 징수

- 이후 녹음물 공연과 관련한 저작권 계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됨.
 - 2002년에는 오디오 장치를 이용한 녹음물 재생에서 유선방송의 이용으로 전환되고 있는 배경음악(BGM) 이용과 관련, 유선방송 사업자나 BGM 음원제작자에 대한 저작물 이용료 징수가 시작됨.

- 2004년에는 「댄스교습소 저작권 침해정지 등 청구사건(ダンス教習所著作権侵害差止等請求事件)」에 대한 나고야 고등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사교댄스 학원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가 이루어짐.
- o 이에 따라, 사교댄스와 유사한 음악저작물 이용형태인 피트니스클럽이나 에어로빅 학원, 수영장 등에 대해 저작권료 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게 됨.
- o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일본의 피트니스클럽 업체를 대표하는 (사)일본피트니스산업협회(FIA)와 협의를 거쳐 2010년 12월 24일, 일본 문화청 장관에게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제출함.
 - ※ 일본의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제13조 제2항」은 저작권 관리사업자가 사용료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이용자 또는 해당 단체로부터 미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o 동 규정에 따라 2011년 4월 1일부터 피트니스클럽이나 에어로빅 학원, 수영장 등 스포츠 업계에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징수하게 됨.
- o 한편, 일본은 ‘신규관리 사전계약 할부제도’를 두고 저작권료 징수개시일 이전에 상기 제도에 따르는 신고절차를 완료한 경우 1년간 10%의 저작권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음
 - 피트니스클럽 등 스포츠 업계에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1년 3월 31일까지 해당 절차를 완료해야 함.

※ 신규관리 사전계약 할부제도(新規管理事前契約割引制度)

(사)일본음악저작권협회는 새로운 분야에서 저작권료 징수를 시작하는 경우, ‘신규관리 사전계약 할부제도(新規管理事前契約割引制度)’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저작권료 징수개시일 전까지 특정 신고절차를 완료한 경우, 징수개시일로부터 1년간 저작물 이용료를 10% 감면해주는 제도임.

(JASRAC, 2011.2.04)



日, SW를 이용한 지상파 방송 라이선스 방식 도입 예정

정보통신심의회는 2011년 4월 26일 지상파 디지털방송과 관련, 새로운 라이선스 기관을 2012년 7월까지 설립하겠다고 발표함. 신설될 기관은 새로운 방식의 라이선스 발행·관리 방식을 통해 방송 수신을 통제할 예정임.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휴대전화 등의 소형기기에도 일본의 고해상도 TV방송 규격을 적용할 수 있으며, 방송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日 정보통신심의회, 지상파 디지털방송 분야 새로운 라이선스 기관 설립 발표

- 2009년 7월, 일본 총무대신의 자문기관인 정보통신심의회는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새로운 기술적·제도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디지털방송 라이선스를 효과적으로 발행·관리하기 위한 기관의 설립계획에 착수함
- 2011년 4월 26일, 정보통신심의회는 ‘제59차 디지털콘텐츠의 유통촉진 등에 관한 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위한 새로운 라이선스 기관을 2012년 7월까지 설립하기로 합의함.
- 새롭게 설립될 라이선스 기관은 권리보호를 위해 보안키 정보의 발행·관리·갱신 및 DB 운용과 홍보업무를 수행하며, 비밀정보 누설이나 불법수신기에 대한 조사업무 및 대책마련 등도 담당하게 됨.
- 동 기관이 운용하게 될 라이선스 방식은 BS컨디셔널액세스시스템(BS Conditional Access Systems)社の 기존 B-CAS 방식과 병존하게 됨.
 - 기존의 라이선스 방식인 B-CAS의 경우 TV에 수신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했으므로 TV의 소형화 및 가격을 낮추기가 어려웠고, 또한 한 회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관리되었기 때문에 투명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 B-CAS는 BS컨디셔널엑세스시스템즈社の 약칭 또는 TV 수신기에 설치되는 카드(B-CAS 카드) 및 이 회사가 제공하는 라이선스 방식을 가리킴. B-CAS 방식은 예전엔 일본의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을 대상으로 방송 수신을 제어하는 한정수신시스템(Conditional Access Systems; CAS)을 의미하다가, 현재는 유·무료 디지털방송에서 디지털저작권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기술을 통해 정품기기를 인증하는 방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됨. 이와 같이 공익성이 높은 무료방송에까지 한정수신시스템을 적용하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음.

SW를 이용한
라이선스 방식으로
비용절감 효과 및
소형기기에 대한
적용성 증대

- 2011년 3월, (사)일본전파산업협회(Association of Radio Industries and Businesses; ARIB)는 새롭게 설립될 기관이 수행할 라이선스 방식의 도입을 위한 표준 규격(STD)을 공개하였으며, 기술적 내용도 구체화되어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임.
- 새로운 라이선스 방식은 SW로 스크램블(scramble)을 해제하여 방송을 수신하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TV에 카드를 삽입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음.
 - 이로 인해 휴대전화 등의 소형기기에도 일본의 고해상도 TV방송 규격을 적용할 수 있으며, 방송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이 라이선스 방식의 적용대상은 지상파 디지털방송만으로 한정되며, 위성파 방송은 기존의 B-CAS 방식을 이용하게 됨.
 -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경우 제조업자가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総務省, 2011.4.26)



日 게임업체, 게임 실연 동영상 유출에 적극적 대응 의사 표명

게임의 실연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인터넷에 무단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 2011년 5월 10일 성인용 미소녀 게임 제작업체 엘(Aile)사가 저작권 침해문제를 제기함. 미소녀 게임 등과 같은 스토리형 게임의 경우 실연 동영상을 미리 보는 것만으로도 게임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게임업체를 옹호하는 의견이 많음

日 미소녀 게임 제작 업체, 게임 동영상 불법 업로드에 대해 저작권 침해문제 제기

- 게임이 실연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에 무단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 성인용 미소녀 게임 제작업체 엘(Aile)사가 2011년 5월 10일 저작권 침해문제를 제기함.
 - 이 업체는 올해 4월 말 발표된 특정 게임의 실연 동영상이 니코니코동영상(ニコニコ動画) 사이트에 업로드된 것과 관련,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정품 구매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힘.
 - ※ 미소녀 게임은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소녀들을 등장시켜 이들과의 관계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비디오 게임으로, 일본 게임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日, 스토리형 게임의 게임 실연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보호 목소리 확산

- 니코니코동영상 사이트에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다양한 분야의 게임 실연 동영상이 빈번히 무단 업로드 되어 왔으나, 이러한 동영상 업로드는 게임 작품의 프로모션(promotion)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게임업체들은 이러한 업로드 행위를 일부러 묵인하거나 조건부로 허용해왔음.
- 그러나 액션게임이나 슈팅게임 등의 스포츠형 게임과 달리 미소녀 게임 등과 같은 스토리형 게임의 경우, 이용자가 실연 동영상을 사전에 보는 것만으로도 실제 게임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게임업체를 옹호하는 의견이 다수임.

※ 참조

zasshi.news.yahoo.co.jp/article?a=20110514-00000002-mijugo-game
www.itmedia.co.jp/news/articles/1105/11/news050.html



日, 보컬로이드 음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부분신탁 관리기구 설립

일본에서는 멜로디와 가사만 입력하면 이에 맞는 디지털 음성을 찾아 마치 사람이 부른 것 같은 노래를 만들어내는 보컬로이드(Vocaloid) 음악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인터넷 노래방 등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아오지 못했음. 이에 2011년 6월 8일부터 자주제작콘텐츠출판관리기구(VMP)가 부분신탁 제도를 활용해 보컬로이드 음악 제작자들이 적절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日, 사람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보컬로이드 음악 인기

- 보컬로이드(Vocaloid)란 야마하社가 개발한 음성합성엔진의 이름으로, 멜로디와 가사만 입력하면 이에 맞는 디지털 음성을 찾아 마치 사람이 부른 것 같은 노래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일본에서는 보컬로이드를 보통 '보카로'라고 부르며, 보컬로이드로 만든 음악을 '보카로곡', 보컬로이드를 이용하는 음악제작자를 프로듀서(producer)의 첫 글자 P를 따서 '보컬로이드P'라고 함.
- 2004년에 보컬로이드를 사용한 최초의 PC전용 패키지가 발매되었고, 2007년에는 보다 자연스러운 노랫소리를 구현할 수 있는 보컬로이드2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접목시킨 제품이 출시됨.
 - 보컬로이드2 시리즈의 제1탄으로 제작된 '하츠네미쿠(初音ミク)'는 캐릭터 일러스트를 패키지에 삽입하는 등 일반적인 음악 SW의 마케팅 방식을 벗어남.
 - 한국에서는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社가 PSP용(用) 「모두의 디바 '하츠네미쿠 - Project DIVA」를 2009년에 발매함.

- 현재, 일본의 크립톤퓨처미디어社, AHS社, 인터넷社, 비프랏트社, 큐레코드社 및 영국의 ZERO-G社, 스웨덴의 PowerFX社 등이 보컬로이드2를 적용한 약 20개의 PC전용 패키지 제품을 상품화한 상태임.
 - 이들 제품들은 영어와 일본어만 적용이 가능했던 반면, 올해 9월에 출시예정인 보컬로이드3는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도 적용할 수 있음.
- 최초에는 보컬로이드를 백코러스(back chorus)에 이용할 목적으로 개발하였으나, 보컬로이드2를 활용한 ‘하즈네미쿠’가 출시된 후 보컬로이드를 메인보컬로 사용한 음악이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음.
 - 과거 슈퍼셀(Supercell)이라는 팀이 ‘하즈네미쿠’를 이용해 제작한 음악이 니코니코동영상에서 큰 인기를 끌자 소니뮤직에서 앨범으로 발매하였으며, 2010년과 2011년에는 보컬로이드 모음집이 오리콘 주간차트 1위를 차지함.
 - 인터넷 노래방 조이스운드(JOYSOUND)의 2010년 랭킹 10위곡을 보면 보카로곡(보컬로이드 곡)이 과반수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많았음.
- 현재 NHK 제1라디오는 보카로곡 전문 프로그램인 ‘일렉트로닉 노래!(エレうた!)’를 2011년 4월 30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10시 15분마다 방송하고 있음.

보카로곡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자주제작콘텐츠출판관리기구 설립

- 한편, 보컬로이드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는 비프랏트(ビーブラッツ)社는 아마하社의 위탁을 받아 자주제작콘텐츠출판관리기구(株式会社自主制作コンテンツ出版管理機構, Vocaloid Music Publishing; VMP)를 설립하였음.
 - 자주제작콘텐츠출판관리기구(VMP)는 보컬로이드를 사용한 이용자제작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 UGC)의 보호 및 이용촉진을 위해 2011년 6월 8일부터 운영을 개시함.
- 자주제작콘텐츠출판관리기구(VMP)는 보카로곡의 저작권자라 할 수 있는 ‘보컬로이드P’가 콘텐츠 이용에 따른 적절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익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자주제작콘텐츠출판
관리기구, 부분신탁
제도 활용해
저작물의 2차적 이용
허가

- 또한 ‘보컬로이드P’에게 저작권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보카로곡의 지분권, 이용형태, 저작권인접권 및 관련 일러스트와 동영상 등을 관리하며,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에 저작권을 부분신탁함으로써 적절한 대가를 ‘보컬로이드P’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됨.
- 이와 더불어, 보컬로이드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는 음반사와 제휴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는 등 이용자들이 보카로곡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이용활성화를 모색할 예정임.
- 인기있는 보카로곡의 경우 일반이용자들이 무단으로 컴퓨터그래픽(CG)을 이용해 프로모션 동영상을 만들거나, 니코니코동영상 사이트의 ‘노래해 보았다(歌ってみた)’ 코너를 통해 리메이크곡을 업로드해 왔음.
 - 위와 같은 일반이용자들의 행위는 보카로곡의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으므로, ‘보컬로이드P’들은 이러한 2차적 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였음.
- 그러나, 저작권 이용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신탁을 하게 되면 일반이용자들의 2차적 이용행위에도 저작권료를 징수하게 되며, 이는 결국 일반이용자들의 2차적 이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게 됨.
 - 이에 ‘보컬로이드P’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보카로곡을 신탁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인터넷 노래방 등에서 보카로곡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도 ‘보컬로이드P’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아오지 못했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작권의 지분권 중 일부만을 신탁하는 부분신탁 제도를 활용하지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자주제작콘텐츠출판관리기구’가 설립된 것임.

※ 부분신탁 제도

현행 일본 저작권 제도 하에서의 지분권을 이용해 음악의 이용상황에 맞도록 신탁범위를 조정하는 방법을 일컬음. 여기서 지분권이란 저작물의 이용방법에 따라 각각 정해진 권리를 의미하며, 저작권은 복수의 지분권으로 구성되어 있음. 음악의 경우, '연주', '녹음', '출판', '대여', '비디오', '영화', 'CM', '게임', '방송', '인터랙티브 송신', '통신가라오케'로 나뉘어져 있고, 어느 지분권을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신탁할지는 관리자가 선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음악 저작권자가 노래방으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받고 싶다면 '연주'와 '통신가라오케'를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에 신탁하면 됨. 인터넷에서는 권리를 행사하고 싶지 않다면, 그 부분의 저작권에 해당하는 '인터랙티브 송신'을 신탁하지 않으므로써 목적을 이룰 수 있음.

- 일본의 부분신탁 제도를 통해 이용자들은 인터넷에서 보카로곡을 자유롭게 2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보컬로이드P'는 상업적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참조

www.ugc-pub.com/?p=91
internet.watch.impress.co.jp/docs/news/20110609_451524.html
www.itmedia.co.jp/news/articles/1106/08/news106.html
www.asahi.com/showbiz/tv_radio/TKY201104300167.html



日本 BSA 사무국, SW 저작권 보호를 위한 e러닝 서비스 제공

일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사무국은 SW 저작권 침해방지 교육을 위해 「BSA e러닝 서비스」를 일본 BSA 홈페이지를 통해 2011년 6월 10일부터 제공함. 동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인지 알지 못하고 행할 수 있는 SW 불법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강생들의 특성에 따른 2개의 입문코스로 구성됨

日本 BSA 사무국, SW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온라인 교육서비스 개시

- 최근 일본에서는 기업이나 조직의 법령준수 및 효율적인 자산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SW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SW 자산관리는 보안성 확보 및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해서도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에 일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usiness Software Alliance; 이하 ‘BSA’) 사무국은 2011년 6월 10일, 온라인상의 SW 저작권 침해방지 교육을 위해 「BSA e러닝 서비스」를 일본 BSA 홈페이지(www.bsa.or.jp/e-learning-public)를 통해 제공함.
 - 동 서비스는 SW 자산관리의 여러 목표 중 법령준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수강생 특성에 따른 2가지 교육코스 제공

- 「BSA e러닝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인지 알지 못하고 행할 수 있는 SW 불법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강생들의 특성에 따른 2개의 입문코스로 구성됨.
 - 각 코스는 20 ~ 30분의 학습을 통해 기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 코스는 다음과 같음.

- ① 최고경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법령준수 입문(トップマネジメントのためのソフトウェア・コンプライアンス入門)
 - 경영자와 IT관리자를 대상으로 기업이나 조직에서의 SW 관리가 경영에 미치는 효과 및 중요성 등을 소개(전5장)
 - ② 지금이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소프트웨어·라이선스 입문(今さら聞けないソフトウェア・ライセンス入門)
 - 일반인을 대상으로 SW 이용 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점과 기본지식을 소개(전4장)
- o 이와 함께, 일본 BSA 사무국은 IT관리자가 직원들의 「BSA e러닝 서비스」 이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BSA 사내 연수용 e러닝 서비스」를 2011년 7월초부터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BSA, 2011.6.10)



日, 웹스토리지에 불법 업로드 한 미성년자 6명 불구속 송치

일본에서 무료 웹스토리지 사이트인 「BB QUEST」를 이용해 뮤직비디오와 애니메이션, TV 프로그램 등을 불법으로 업로드 한 미성년자 6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7월 11일에 불구속 송치됨. 이들은 「BB QUEST」를 통해 영상물을 휴대형 게임기로도 볼 수 있도록 변환·공개하였으며, 해당 사이트는 7월 8일자로 폐쇄됨

日, 웹스토리지에 불법 영상물을 업로드 한 미성년자 6명 불구속 송치

-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BB QUEST」 사이트를 이용해 뮤직비디오와 애니메이션, TV 프로그램 등의 영상물을 불법으로 업로드 한 미성년자 6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2011년 7월 11일, 후쿠오카 지방 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됨.
 - 이들 중 2명은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의 회원사가, 4명은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CCS)의 회원사가 고소한 것임.

※ 「BB QUEST」는 모바일 사이트를 제작·운영하는 넷재팬(NetJapan)사의 무료 웹스토리지 사이트로서 이용자는 이를 통해 각자의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음.

- 이들은 「BB QUEST」 사이트에 「니코니코 동영상관」 등의 동영상 업로드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TV음악 프로그램과 유튜브(YouTube), 「니코니코 동영상」 등에서 공개되는 영상물을 휴대형 게임기로도 볼 수 있도록 변환하여 공개하였음.

해당 사이트 「BB QUEST」는 폐쇄

- 이번 사건에서 적발된 6명이 미성년자이지만 전원 불구속 송치하게 된 것은 일본의 젊은 층이 이용하는 모바일 동영상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며, 해당 사이트 「BB QUEST」는 7월 8일자로 폐쇄 조치됨.

(JASRAC & ACCS, 2011.7.14)

Global Copyright Protection

日本



日, 초고화질 영상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 개발

NHK와 (주)미쓰비시전기는 고화질의 영상정보를 고속으로 읽어낼 수 있는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을 개발했다고 2011년 7월 19일에 발표함. 이번에 개발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기존의 방식보다 화질이 저하되는 것을 억제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단시간에 삽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임. 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압축된 영상뿐만 아니라 축소 또는 아날로그로 변환된 영상으로부터 검출도 가능하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日, NHK & 미쓰비시전기, 고화질에 적합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 공동개발

- 일본 방송협회(이하, NHK)와 (주)미쓰비시전기는 고화질 텔레비전(HDTV) 영상정보를 고속으로 읽어낼 수 있는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 기술을 공동 개발했다고 2011년 7월 19일에 발표함.

※ 디지털 워터마킹은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각종 디지털 데이터에 저작권 정보와 같은 비밀 정보를 삽입하여 관리하는 기술로써, 이를 통해 원본 출처 및 정보를 추적할 수 있음.

- 두 회사는 오래전부터 영상정보 관리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해오고 있음.

- 현재 일본에서 이용되는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방송을 위해 촬영 등에 사용하는 고화질 영상보다 AVI 파일 등의 압축된 영상에 적합한 반면 정보를 고속으로 삽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축소 또는 아날로그로 변환된 영상으로부터 워터마크 검출 가능

- 이번에 개발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분할 처리에 의한 삽입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방식보다 화질이 저하되는 것을 억제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단시간에 삽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임.

- 또한, 새롭게 개발된 영상처리 기술을 이용해 몇 초 분량의 짧은 영상에서도 삽입된 정보를 고속으로 검출하는 것이 가능함.
- o 이번에 개발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① 디지털 워터마킹 삽입 시 화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개선되어 고화질이 필요한 방송 프로그램의 촬영에서부터 편집·송출에까지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모든 과정에서 일관된 정보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음.
 - ②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압축된 영상뿐 아니라, 축소 또는 아날로그로 변환된 영상으로부터 워터마크 검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활용할 수 있음.
 - ③ 범용적인 라이브러리 형식의 SW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영상기기에 응용할 수 있음.

(NHK & 三菱電機, 2011. 7. 19)

Global Copyright Protection

日本



日 크로스워프社, 유료 P2P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 감시 확대

크로스워프(Crosswarp)사는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해 P2P 네트워크를 감시하는 'P2P 파인더' 유료서비스를 2003년부터 제공해왔음. 2011년 8월 크로스워프사는 최근 일본에서 새롭게 서비스되고 있는 P2P 프로그램 '퍼펙트다크(PerfectDark)'의 네트워크도 감시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함

日 크로스워프社,
유료 P2P 모니터링
서비스 대상에 'P2P
파인더' 추가

- 크로스워프(Crosswarp)사는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해 유료로 P2P 네트워크를 감시해주는 'P2P 파인더(Finder)' 서비스를 2003년에 개시하고, '위니(Winny)', '쉐어(Share)', '라임와이어(Limewire)', '카보스(Cabos)' 및 '비트토렌트(BitTorrent)'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해왔음.
- 한편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P2P인 '위니'나 '쉐어'의 이용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새롭게 서비스되고 있는 P2P 프로그램인 '퍼펙트다크(PerfectDark)'의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2011년 8월 1일 크로스워프사는 '퍼펙트다크'의 네트워크도 감시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함.

※ '퍼펙트다크(PerfectDark)' 서비스

윈도우즈(Windows) 기반의 파일공유 SW로서, '위니'와 '쉐어'에서는 목적파일에 맞는 클러스터 키워드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키워드를 바꾸었을 때 검색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었음. 그러나 '퍼펙트다크'는 네트워크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검색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DKT(분산 키워드 테이블)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노드(node)의 클러스터 구축에 의지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클러스터 키워드를 입력·변경하는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장르가 다른 복수의 파일을 즉석에서 검색하는 일도 가능해짐. 또한 트리 검색이라고 불리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검색과 동시에 유연한 추출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네트워크 또는 콘텐츠 중심의 2가지 웹기반 서비스 제공

- 크로스워프社가 제공하는 'P2P 파인더'는 Type-U와 Type-R의 2가지 종류가 있음
 - ① Type-U
 - 학교법인 등 기관의 네트워크에서 금지되어 있는 P2P 노드(node)를 감시하여 IP주소와 검색 시간을 통지함.
 - 해당 기관은 통지받은 정보를 근거로 해당 이용자에게 경고조치를 취함으로써 네트워크상의 저작권 침해나 트래픽 증가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
 - ② Type-R
 - 콘텐츠 관리자가 지정한 특정 저작물에 대해 P2P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해당 저작물 파일을 보유한 P2P 노드를 조사하여 분석결과를 통지함.
 - 콘텐츠 관리자는 통지받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침해방지 대책을 검토하게 됨.
- Type-U와 Type-R 모두 SaaS(Software as a Service) 방식으로 서비스되며, 웹기반의 관리 화면을 통해 운영되기에 고객들이 별도의 기기를 구매할 필요가 없음.
 - ※ SaaS(Software as a Service)는 기존의 패키지 SW와 같이 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형태가 아닌, 인터넷을 기반으로 SW를 빌려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로서 클라우드 서비스(Cloud Service)의 한 모델임.

(株式会社クロスワープ, 2011. 8. 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日本



日, 동영상 사이트를 통한 불법 음악파일 다운로드 年 12억 건

일본레코드협회(RIAJ)는 ‘동영상 사이트의 이용실태조사 검토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한 동영상 사이트에서의 음악파일 다운로드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2011년 8월 8일에 발표하였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동영상 사이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36%가 동영상 사이트에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해 본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음악파일이 불법저작물이며 연간 불법 다운로드된 수는 12억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日레코드협회,
동영상 사이트
이용실태 조사를
위한 위원회 설립

- 일본레코드협회(RIAJ)는 2011년 4월, 일본의 동영상 사이트 이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동영상 사이트의 이용실태조사 검토위원회(動画サイトの利用実態調査検討委員会)’(이하, ‘검토위원회’)를 설립하였음.

- 검토위원회는 학계 전문가, 인터넷 이용자 대표, 인터넷 사업자 및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됨.

- 검토위원회는 동영상 사이트에서의 불법 음악파일 다운로드가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음악파일 이용실태를 조사하였으며, 2011년 8월 8일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음.

- 이번 조사는 13 ~ 69세의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4,211명이 응답함.

응답자의 70%
동영상 사이트 이용,
불법 다운로드 年
12억 건

-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동영상 사이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36%가 동영상 사이트에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해 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동영상 사이트 이용자의 약 50%가 다운로드 경험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 또한, 다운로드되는 음악파일 대부분이 불법저작물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불법 다운로드 수는 연간 12억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 이는 2010년 유료 음원 다운로드 수인 약 4억 4,100만 건의 약 3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법 다운로드가 음반업계에게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一般社団法人日本レコード協会, 2011.8.8)

Global Copyright Protection

日本



日 출판유통대책협의회, 전자서적에 대한 출판사의 저작권접권 부여 요청

일본 출판유통대책협의회는 문부과학성과 문화청이 2011년 8월 26일에 공동개최한 「제11회 전자서적의 유통과 이용의 원활화에 관한 검토회의」에서 전자서적의 불법복제·전송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출판사에게도 저작권접권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하였음

日 출판유통대책협의회, 전자서적과 관련해 출판사의 권리 확대를 위한 요청서 제출

- 일본 출판유통대책협의회는 문부과학성과 문화청이 2011년 8월 26일에 공동개최한 「제11회 전자서적의 유통과 이용의 원활화에 관한 검토회의」에서 출판사에게도 저작권접권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하였음.
 - 상기 요청서는 저작권접권 중 특히 전자서적의 유통에 관련한 고유의 권리를 출판사에게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 출판유통대책협의회는 일본의 98개 출판사를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음.
- 일본의 출판물 유통시스템은 저작물 재판매제도와 위탁판매제도에 기반하고 있으나 전자서적은 저작물 재판매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전자서적의 출판사는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갖지 못함.
 - 이에 디지털 출판시장에서 불법적인 복제·전송에 대해 출판사가 취할 수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왔음.

現 음반·영상제작자는 저작권접권 보유

- 출판사들은 자신들에게 전자서적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전자서적의 유통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음반이나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저작권접권에 의해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출판사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부여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함.

- 향후 전자서적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출판사에게 부여할 것인지, 부여한다면 어떤 권리를 부여할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저작인접권과 같은 강력한 권리를 출판사에게 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참조

johokanri.jp/stiupdates/japan/2011/08/006319.html, 2011.8.24.

ameblo.jp/ryuutai/entry-10996236657.html, 2011.8.24.

ebook.itmedia.co.jp/ebook/articles/11108/24/news134.html, 2011.8.24.

Global Copyright Protection

日本



日 20개 출판사, ‘출판디지털기구’ 설립에 합의

일본의 20개 출판사는 출판물의 디지털화 추진을 위해 2011년 말까지 ‘출판디지털기구’를 설립하겠다고 2011년 9월 15일에 밝힘. 이 기구는 출판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전자서점 및 플랫폼에 대한 전자출판물 전송을 지원하며, 출판물의 디지털화 및 저작권자에 대한 수익분배 업무까지 담당할 예정임.

日 출판업계,
출판물의 디지털화를
위해 출판디지털기구
설립 합의

- 일본의 20개 출판사는 출판물의 디지털화 추진을 위해 2011년 말까지 ‘출판디지털기구(가칭)’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2011년 9월 15일에 밝힘.
 - 동 기구 설립에 합의한 출판사는 임프레스홀딩스(インプレスホールディングス), 케이소쇼보(勤草書房), 고단샤(講談社), 코우분사(光文社), 슈우에이사(集英社), 쇼우갓칸(小学館), 신쵸오샤(新潮社), 지쿠마쇼보(筑摩書房), 도쿄대학출판회(東京大学出版会), 도쿄전기대학출판국(東京電機大学出版局), 발행소닷컴(版元ドットコム), 분케이 슈(文藝春秋), 헤이본사(平凡社), 유허가(有斐閣) 등임.
- ‘출판디지털기구’의 설립 목적은 공공 인프라 정비를 통해 전자출판시장을 확대하고, 일본 출판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전자출판물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임.
 - 이의 일환으로 인터넷에서 현재까지의 모든 일본 출판물에 대한 풀 텍스트(full text)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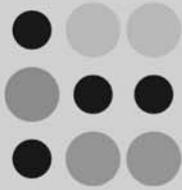
출판디지털기구,
전자출판물의 제작·
보관·전송 업무
담당

- ‘출판디지털기구’는 상기 20개 출판사의 출판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도서관 관련 업무를 대행하며, 국립국회도서관이 전자화한 잡지·서적의 민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게 됨.

Global Copyright Protection JAPAN

- 또한, 전자서점 및 플랫폼에 대한 전자출판물 전송을 지원하고, 출판물의 디지털화를 수행하며 저작권자에 대한 수익분배 업무까지 담당하게 됨.

(知財情報局, 2011.9.6.)



GLOBAL COPYRIGHT PROTECTIO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아시아 지역 중국

영화 '양자탄비', 온·오프라인 상 적극적 불법저작물 단속활동으로 흥행 기여	52
중국정부, 2010년 저작권 보호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54
中, 바이두社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온라인 침해 근절 운동 확산	56
상하이市, 온라인 불법저작물 단속활동 '검망행동(劍網行動)' 실시	59
中, 세계 최초로 저작권 자산평가 기준 발표	61
북경시 판권국, ISP에 업로더 정보를 1년간 보관하도록 규정	63
中, '제7차 검망행동(劍網行動)'에서 저작권 침해사건 처리실적 역대 최대	65
상하이 교통대학교, 인터넷 저작권 침해소송 분석보고서 발표	67
中 칭다오市, 저작권 모범 도시로 지정	68
中, 오프라인 불법저작물 단속 성과 및 10대 저작권 침해사건 발표	70
中 칭다오市, 저작권 모범도시로 지정	72



영화 ‘양자탄비’, 온·오프라인 상 적극적 불법저작물 단속활동으로 흥행 기여

중국 영화 ‘양자탄비(讓子彈飛)’는 개봉 다음날 불법저작물이 유통되어 저작권 피해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중국관권보호중심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단속과 ‘소황타비(掃黃打非)’ 본부 및 신문출판총서의 오프라인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저작물 확산을 방지하여 흥행에 기여함

영화 ‘양자탄비’,
개봉 직후
불법저작물 출현으로
저작권 피해 위기
직면

- 중국에서 2010년 12월 16일부터 상영된 영화 ‘양자탄비(讓子彈飛)’는 개봉 당일에만 3,000만 위안 이상의 흥행수익을 기록하였으나, 극장에서 도촬한 영상물이 개봉 다음날에 인터넷 상에 유출되었으며, 그 이튿날에는 고화질 불법 DVD판이 출현하면서 저작권 피해 위기에 직면하게 됨.
- 이에 ‘양자탄비’의 제작자 측은 중국의 주요 동영상 사이트에서 유료로 영화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제휴서비스를 개시하였음.
 - ‘양자탄비’는 중국 최초로 영화관과 동영상 사이트에서 동시에 공개되었으며, 해당 동영상 사이트에 공개된 영상콘텐츠 중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함.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과 오프라인 상
단속활동으로
불법저작물 확산
방지

- 이러한 성과는 온·오프라인 상 적극적인 불법저작물 단속활동에 의해 가능했다고 볼 수 있음.
- 중국관권보호중심(CPCC)은 ‘양자탄비’ 영화제작자 측으로부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인터넷 모니터링을 의뢰받아 올해 3월까지 370개 이상의 불법 게시물들을 적발했으며, 신속한 삭제처리로 불법저작물의 유통을 차단함.

※ 중국판권보호중심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영상물의 특징점들을 추출하여 인터넷 사이트들을 모니터링하고, 불법영상물 탐색 시 자동으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통보를 하는 동시에 저작권 침해 증거를 확보하는 기능을 제공함. 동 시스템은 중국 정부기관과 사법기관, 기업, 협회 및 영화제작자를 위해 침해 증거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중국판권보호중심은 외국 저작권리자들을 위해서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1월 5일까지 (주)도에이(Toe)社 등의 일본 저작권리자들에게 위임을 받아 OSP에게 발송한 삭제통보는 총 100,755건으로, 그 중 실제 삭제건수는 100,739건이며 유효 삭제율은 99.98%로 나타남.

- 오프라인 상에서는 불법저작물 단속을 수행하는 ‘소황타비(掃黃打非)’ 본부와 신문출판총서가 각 지방의 관련기관에 ‘양자탄비’의 저작권 보호 강도를 높이고 불법복제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을 지시함.
- 이와 함께, 이들 두 기관은 올해 6월까지 실시되는 전국적 불법저작물 단속활동인 ‘지적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제조·판매 척결을 위한 전담행동방안(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专项行动方案)’의 일환으로 합동단속을 수행함.
 - 신문출판총서의 3월 발표내용에 따르면, 광저우시(廣州市)의 한 제조공장에서만 ‘양자탄비’, ‘비성물우2’ 등의 불법저작물 2만 8천여 점을 수거했으며, 산시성(陝西省)에서는 20만 3천여 점을 수거하고 18명을 사법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판권보호중심, 중국국가판권국, 2011.3.28)



중국정부, 2010년 지재권 보호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국가관권국,公安부, 세관총서 등의 정부기관은 2010년 지재권 보호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지난 4월에 발표함. 이들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도에 접수된 저작권 관련 민사소송 건수는 24,719건이며, 중국 행정기관이 처벌한 저작권 침해 사건은 약 10,500건, 세관총서가 압수한 불법복제물은 2만 1,000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 각 정부기관 2010년 지재권 보호현황 발표

- 2011년 4월, 중국의 최고인민법원, 국가관권국,公安부, 세관총서, 문화부 등 각 정부기관은 2010년도 지재권 보호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함.
- 최고인민법원은 2011년 4월 19일, 「2010년 중국법원 지적재산권 사법보호상황 백서」를 통해 2010년에 전국에서 접수된 저작권 관련 민사소송이 24,719건으로 2009년에 비해 61.5% 증가했다고 밝힘.
- 국가지적재산권국과公安부, 세관총서, 문화부, 국가관권국 등 11개 기관이 2011년 4월 21일에 공개한 「2010년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상황 백서」에 따르면, 2010년 중국 행정기관이 처벌한 저작권 침해 사건은 약 10,500건이며, 사법기관으로 이송된 사건은 약 530건으로 나타남.

※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구제는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행정기관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특징임. 저작권 침해의 경우, 그 정도가 사회 공공의 이익을 저해했을 때에는 저작권 행정관리부문이 침해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위법소득 및 복제품을 몰수·폐기함과 더불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또한 그 침해 정도가 중대한 경우 침해물의 제작에 사용된 재료, 도구, 설비 등을 몰수할 수 있음

소황타비 본부, 전국
규모 불법복제물
소각 캠페인 개최

- 국경지역에서 불법복제물 단속을 담당하는 세관총서는 2011년 4월 25일, 「2010년 중국세관 지적재산권 보호상황」 보고서를 통해 작년 세관에서 압수한 불법복제물이 2만 1,000점으로, 금액으로 환산 시 약 2억 7,000만 위안에 달한다고 밝힘.
- 한편, 중국에서 불법복제물 단속을 수행하는 소황타비(掃黃打非) 본부는 「전국 불법복제물 및 출판물 집중소각 활동」을 개시한다고 2011년 4월 22일에 발표함.
 - 동 캠페인은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매년 4월 26일)’을 맞아 노동과 창조, 지식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황타비 본부의 단속성과를 홍보하기 위함임.
- 이번 캠페인을 통해 중국의 31개 성·자치구·직할시에서 총 2,648만점에 달하는 불법 음악물과 영상물, 출판물이 소각되었음.
 - 소각된 불법복제물의 수가 100만점이 넘는 지역은 베이징시, 허베이성,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산둥성, 허난성, 광둥성, 저장성 등 13곳으로 나타남.
- 또한, 소황타비 본부는 2011년 1/4분기 동안 1,412만점에 달하는 불법복제물을 압수하였으며, 4,004건의 침해 사건을 처리했다고 발표함.
 - 한국의 저작권보호센터가 2011년 1/4분기에 6만 3,674점의 불법복제물을 단속한 것과 비교했을 때, 중국에서 매우 많은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中國國家版權局, 中國掃黃打非網, 國家知識產權局, 2011.5.5)



中, 바이두社の 저작권 침해로 인한 온라인 침해 근절 운동 확산

중국 최대의 포털사이트업체인 바이두社は 자사의 사이트가 저작권 침해를 조장한다는 비난이 확산됨에 따라 긴급히 저작권 침해 신고채널을 마련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97.9%의 문학작품들을 삭제 처리하였음. 이번 사건의 영향으로 중국 저작권 단체 및 변호사 단체 등은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2011년 4월 26일 중국디지털판권권익보호연맹(中國數字版權維權聯盟)을 공동 설립함

바이두社の 저작권 침해에 대한 권리자들의 비난 여론 확산

- 2011년 3월 15일 중국의 유명 인터넷작가 무룡쉐춘(慕容雪村)은 '3·15 중국작가의 바이두 성토서(이하 성토서)'라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중국 최대의 포털사이트인 바이두가 음악 및 출판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함.
 - 성토서는 바이두社の 'MP3서비스(mp3.baidu.com)'와 '바이두문고(wenku.baidu.com)'가 각각 음악저작물과 어문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창작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이에, 자평아오(賈平凹), 류신우(劉心武) 등의 중국 작가 50여명과 국가판권국의 판권관리 책임자는 성토서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힘.
- 이튿날인 2011년 3월 16일, 중국음상협회(中國音像協會)의 음반사업위원회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바이두에 항의하는 공개장'을 발표함.
 - 음반사업위원회는 바이두社가 링크(link)를 통해 불법음악물을 이용하게 하는 'MP3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광고수입을 얻고 있다고 밝히고, 모든 음악창작인들이 단합하여 바이두社에 항의할 것을 촉구함.

바이두社, 권리자
측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불법저작물
삭제 결정

- 성토서 발표 이후 비난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바이두社는 2011년 3월 24일에 중국 문자저작권협회(中國文字著作權協會)의 대표단과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대표단은 바이두社에게 공개사과와 손해배상 및 불법저작물 전송 중단을 요청함.
- 2011년 3월 25일, 바이두社는 ‘바이두문고’ 홈페이지에 ‘판권측 녹색신고통로(版權方綠色舉報通道)’를 만들어 저작권 침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이튿날에는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중국어 문학작품들을 3일 안에 삭제할 것이며 저작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작가들에게 사과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 실제로 2011년 4월 30일까지 97.9%에 달하는 문학작품 게시물들이 삭제 처리되었으나, 교육·외국어·자격고시 등을 포함한 6개 유형의 게시물들은 거의 삭제되지 않음.
- 2011년 3월 30일에는 바이두문고에 '판권제휴플랫폼(版權合作平臺)'을 구축하고, 유료서비스로 인한 수익과 광고수익의 대부분을 권리자들에게 분배하겠다고 밝힘.
 - 유료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무료로 저작물의 일부분을 열람하게 하고, 전문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함.
 - 권리자들에게 저작물 이용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각 거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투명성을 높임.
 - ※ 2011년 5월 26일 현재까지 바이두社는 17개 기관들과 판권계약을 체결했으며, 1,414권에 달하는 전자도서들을 보유하고 있음.

中,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 위한
민관노력 강화

- 2011년 4월 19일, 최고인민법원의 한 관계자는 ‘바이두문고’ 사건과 같은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히고, 올해 안에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법해석 초안’ 작성에 착수하겠다고 밝힘.
 - 동 초안은 ‘피난처 원칙(避風港原則)’의 적용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됨.
 - ※ ‘피난처 원칙’이란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면책받을 수 있는 일정 조건을 말함.

※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일정한 경우 OSP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고 있음. 예를 들면, 저작권법 제103조에서 OSP가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침해라고 여겨지는 복제물을 서비스사이트로부터 삭제하고 즉시 그 복제물을 복제·전송하는 자에게 삭제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관련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또한 법 제102조에서 OSP가 저작물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행위를 중단시킨 경우에도 침해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침해사실을 알고 그 행위를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됨.

- ‘바이두문고’ 사건의 영향으로 2011년 4월 26일 베이징에서는 권리자정보 확인과 권리보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중국디지털판권권익보호연맹(中國數字版權維權聯盟)이 설립되었음.
- 동 연맹은 중국판권협회(中國版權協會), 중국문자저작권협회, 중국음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中國音像著作權集體管理協會), 중국촬영저작권협회(中國攝影著作權協會), 중국인터넷협회(中國互聯網協會), 해적판거부연합체(抵制盜版聯合體), 베이징국제판권거래센터(北京國際版權交易中心) 및 변호사단체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것임.

(中國掃黃打非網 2011.5.26)

Global Copyright Protection

中國



상하이市, 온라인 불법저작물 단속활동 '검망행동(劍網行動)' 실시

상하이市의 판권국, 공안국 등 6개 정부기관은 2011년 5월, 합동회의를 열어 인터넷상의 불법저작물 단속활동인 '검망행동(劍網行動)'을 향후 3개월간 실시하겠다고 선포함. 이에, 상하이의 8개 인터넷 기업들은 '상하이 인터넷업계 판권자율공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방지와 건전한 인터넷 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상하이市 6개
정부기관, 2011
검망행동 개시

- 상하이市의 판권국, 공안국, 문화시장행정집법본부(文化市場行政執法總隊), 통신관리국 등 6개 정부기관은 2011년 5월 11일, 합동회의를 열어 인터넷상의 불법저작물 단속활동인 '검망행동(劍網行動)'을 실시한다고 선포함.
 - 이번 '검망행동'은 2005년에 시작된 이후 7번째 활동이며 3개월간 진행될 예정임.
- '검망행동'의 목표는 음악, 영상, 출판, SW 저작권 침해 및 인터넷상의 불법복제물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과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상하이市의 상황에 맞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인터넷 판권보호 메커니즘을 구축·완비하는 것임.
- 이에, 상하이의 대표적인 인터넷 업체들인盛大게임(盛大游戲), 치텐중문넷(起點中文網), PPS, 투더우넷(土豆網), PPTV, 지동넷(激動網), 주유네트워크(久游網絡), 천이네트워크(天翼網絡)는 '상하이 인터넷업계 판권자율공약'을 정식으로 체결함.
 - 공약을 체결한 8개 기업들은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방지와 건전한 인터넷 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 2010년 9월, 상기 8개 인터넷 업체들은 상하이판권보호협회의 지도 하에 '상하이 인터넷업계 판권자율공약'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음. 이 기간 동안 1천여 건에 달하는 불법저작물들을 자발적으로 삭제하였으며, 업체들 사이의 저작권 분쟁도 공약 체결전보다 80% 감소함.

상하이시, 2010년
검망행동을 통해
371개의 불법사이트
단속

- 한편, 2010년에는 상하이시 인터넷관권종합정비지도소조(網絡版權綜合治理領導小組)의 지휘 하에 ‘검망행동’이 실시되었음.
- 이를 통해, 인터넷상의 61건의 저작권 침해사건을 처리하고 상하시의 뉴스사이트와 상업사이트에 게시된 322개의 저작권 침해 정보를 삭제하였으며, 371개의 불법사이트를 단속한 바 있음.

(中國國家版權局, 中国保护知识产权网, 2011.6.25.)

Global Copyright Protection

中國



中, 세계 최초로 저작권 자산평가 기준 발표

중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중국자산평가협회가 발표한 '저작권 자산평가 지도의견'에 따라 저작권의 자산가치를 평가하게 됨. '저작권 자산평가 지도의견'은 세계 최초의 국가공인 저작권 평가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 자산의 정의, 저작권 자산평가의 기본조건, 평가대상, 평가결과 공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중자산평가협회, 저작권의 자산가치 평가를 위한 준칙 발표

- 중국정부가 문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에 따라 저작권의 관리 및 보호가 중요해 지고 저작권의 가치평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저작권은 복잡한 권리관계와 미래 수익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가치평가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간 저작권 자산평가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준이 부재하여 평가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음.
- 이에, 중국자산평가협회(中國資產評估協會)는 저작권 가치평가를 규범화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1년 5월 9일, 저작권 자산평가 준칙인 '저작권 자산평가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하였으며, 2011년 7월 1일부터 지도의견에 따라 저작권의 자산가치를 평가하게 됨.
 - ※ 지도의견은 중국자산평가협회가 2008년 12월에 발표한 '자산평가준칙 - 무형자산(資產評估準則 - 無形資產)'에 기초한 것으로, 재정부와 국가판권국 등 관련기관들과의 협의 하에 제정된 것임.

中, 세계 최초로 국가공인 저작권 평가기준을 마련

- 중국자산평가협회는 지도의견의 내용에 저작권 자산의 정의, 저작권 자산평가의 기본조건, 평가대상, 평가결과 공개방법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저작권 자산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

- 세계 최초의 국가공인 저작권 평가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의견의 시행을 통해, 중국정부는 담보 및 기타 거래에서의 저작권 이용을 활성화하고 문화산업 및 창조산업의 발전이 촉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中國國家版權局, 中國資產評估協會, 財政部, 2011.6.26.)

Global Copyright Protection

中國



북경시 판권국, ISP에 업로더 정보를 1년간 보관하도록 규정

북경시 판권국은 2011년 6월 2일 ‘정보네트워크 전송권보호 지도의견’을 제정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이 지도의견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업로더 정보를 1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사이트의 회원들의 실명등록을 장려해야 함. 또한,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는 회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법 업로더가 계속될 경우 그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정지하고, 저작권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북경시 판권국, ISP
제재규정인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보호
지도의견’을 8월
1일부터 시행

- 중국정부는 수차례의 집중단속을 통해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를 감소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바이두(百度), 유쿠(优酷), 투더우(土豆), 쉰레이(迅雷) 등의 대형 사이트로 인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해왔음.
- 이에 북경시 판권국(北京市版权局)은 콘텐츠 유통 사이트의 운영과 저작물 이용행위를 규제하겠다고 밝히고, 2011년 6월 2일에 ‘정보네트워크 전송권보호 지도의견(信息网络传播权保护指导意见)’(이하 ‘지도의견’)을 제정하였으며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 동 지도의견의 제정 목적은 인터넷상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함과 더불어 저작권 정보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임.
 - ※ ‘정보네트워크 전송권보호 지도의견’은 베이징시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행정규범임.
- 동 지도의견의 제정을 위해 북경시 판권국은 2009년 하반기부터 중국 인터넷기업, 관련 전문가 및 북경시 고급인민법원과 협의하였으며, 지도의견이 동 법원이 2010년 5월에 공포한 ‘인터넷 저작권 분쟁사건 심리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지도의견(审理涉及网络环境下著作权纠纷案件若干问题的指导意见)’에 부합하도록 하였음.

북경시 판권국,
ISP에게 업로더 정보를
1년간 보관하도록
지도의견에 규정

※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의 ‘인터넷 저작권 분쟁사건 심리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지도의견’은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이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권리침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이트가 공동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북경시의 저작권 민사재판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북경시 판권국의 지도의견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업로드를 한 자의 정보(성명 또는 ID, IP주소 등)를 반드시 기록하고 1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실명등록을 장려하여야 함.
 - ※ 이는 저작권 침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인 업로더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ISP에게 보관하도록 한 것임.
- 이와 더불어, ISP는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는 사이트 회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야 하며,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업로드가 계속되는 경우 그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정지하고 저작권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함.
- 또한 다음 5가지 저작물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유통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 영화, 드라마 및 기타 전문적으로 제작한 장편 동영상
- 2) ‘출판시도서목록(Cataloging in Publication; CIP)’ 정보가 있는 저작물
- 3) 스포츠 경기, 문화·예술 공연 및 TV, 인터넷 생방송 프로그램
- 4) 인지도 있는 작가나 제작자의 저작물, 또는 인지도가 높은 저작물
- 5) 인기리에 방영, 판매되고 있는 기타 저작물

- 한편 저작권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메일 또는 서신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에 대한 삭제 또는 링크 차단 등의 조치를 ISP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ISP는 요청을 받은 즉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만일, 24시간 내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ISP는 서면으로 해당 권리자에게 그 지연사유를 설명해야 함.

(中國國家版權局, 北京市版權局, 2011.7.25.)

Global Copyright Protection

中國



中, '제7차 검망행동(劍網行動)'에서 저작권 침해사건 처리실적 역대 최대

중국 국가판권국(國家版權局),公安部(公安部),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실시한 온라인 불법저작물 단속활동인 '제7차 검망행동(劍網行動)'의 성과를 발표하였음. 이 발표에 따르면, 1년 동안 전국적으로 처리한 인터넷 저작권 침해사건은 총 1,148건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수행된 7차례 '검망행동' 중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렸으며 저작권 침해신고를 통한 적발이 전체의 약 72%를 차지하였음

中 정부기관, '제7차 검망행동'에서 총 1,148건의 침해사건 적발

- 중국 국가판권국(國家版權局),公安部(公安部),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는 2011년 6월 21일, 베이징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실시한 온라인 불법저작물 단속활동인 '제7차 검망행동(劍網行動)'의 성과를 발표하였음.
- 이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검망행동'에 참여한 정부기관들이 처리한 인터넷 저작권 침해사건은 총 1,148건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수행된 7차례 '검망행동' 중 가장 높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사건 중 행정처리된 사건은 466건, 사법기관에 이송되어 처리된 형사사건은 66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국가판권국이 소황타비 본부,公安部,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 5개 기관과 협력하여 처리한 사건은 17건임.
 - 현재 이 17건 중 7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상태로, 20명의 피고인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벌금액은 모두 약 570만 위안이며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음.
 - 이번 '검망행동'에서 각급 판권국들은 저작권 침해자들에게 비교적 높은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소득과 서버설비 등을 몰수하는 등 행정처벌의 수준을 크게 강화함.

중 국가판권국, 동영상 사이트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수행

- 한편 국가판권국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동영상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인터넷 저작물의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음.
 - 이를 위해 신랑(新浪), 쉘우후(搜狐), 유쿠(优酷), 투더우(土豆), 쿠6(酷6), 쉰레이(迅雷) 등의 18개 동영상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300개의 저작물을 선정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수행함.
 - 상기 300개 저작물에는 중국 동영상 사이트에서 방문자 수 또는 다운로드 수가 가장 많은 영화와 드라마들이 선정됨.
- 국가판권국은 각 사이트들에게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후 저작물을 배포할 것과 이용허락 없이 업로드 된 저작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라이선스 정보를 신고하지 않고 저작물을 배포하는 사이트들에게 라이선스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함.
 - 2011년 1월 국가판권국은 공안부, 공업정보화부와 협력하여 동영상 사이트들의 저작물 배포현황을 발표하고, 불법저작물을 삭제조치하지 않은 유스(悠视) 등의 사이트들을 공개하였으며, 라이선스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이트들에게 경고조치 함.

일반인의 침해신고를 통한 실적 증대

- 이번 '검망행동'에서 국가판권국은 '12390'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해 1,000여 건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접수했으며, 기초적인 심사를 거친 후 2010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27개 성, 자치구, 직할시의 판권국에 832건의 사건을 이송하였음.
- 각 지방 판권국에서 접수·처리한 사건 등을 포함하여 2011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처리한 인터넷 저작권 침해사건은 총 1,148건이며, 이 중 저작권 침해신고를 통한 적발이 약 7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中國國家版權局, 公安部, 工业和信息化部, 2011.7.25)

Global Copyright Protection

中國



상하이 교통대학교, 인터넷 저작권 침해소송 분석보고서 발표

중국 상하이 교통대학교는 2011년 6월 17일에 개최된 ‘2011년 금융화 속 미디어 영상 저작권 거래에 대한 보호 토론회’에서 상하이법원의 판결 550여 건을 분석한 인터넷판권사법보고서(網絡版權司法報告)를 발표함.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원고의 승소율은 94.4%이며, 사법구제방식에 있어서 경제적 손해배상이 95.1%로 가장 높게 나타남

상하이 교통대학교,
인터넷 저작권
침해소송 분석한
인터넷판권사법보고
서 발표

- 중국 상하이 교통대학교(交通大學校)는 2011년 6월 17일에 개최된 ‘2011년 금융화 속 미디어 영상 저작권 거래에 대한 보호 토론회(2011年媒体版权高峰论坛暨金融化中的影视版权交易与保护专题讨论会)’에서 인터넷판권사법보고서(网络版权司法报告)를 발표함.
 - 이 토론회는 상하이 교통대학교와 문화재산권거래소(文化产权交易所)가 공동으로 주최한 것임.
 - 인터넷판권사법보고서는 상하이 교통대학교 인문예술연구소(人文艺术研究院)가 10년간의 상하이법원 판결 550여 건을 분석한 것임.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원고의 승소율은 94.4%에 달하고, 전체 사건의 55%는 종결까지 6개월 미만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중급(中級)인 민법원에서 35.8%의 1심 사건을 심리한 것으로 나타남.
- 사법구제방식에 있어서 경제적 손해배상이 95.1%로 가장 높았고 침해 중지가 41.8%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원고 측의 정신적 손해배상 요청은 모두 기각되었음.
 - 평균 경제적 손해배상액은 2만 3,258위안, 평균 조사비용은 1만 1,565위안이며 평균 재판비용은 2,667위안으로 나타남.

(中國國家版權局, 上海市版权局, 2011.7.25.)



中 칭다오市, 저작권 모범 도시로 지정

국가판권국은 2011년 9월 9일 칭다오(靑島)시를 전국저작권시범도시로 지정한다고 발표함. 칭다오시는 2009년 '전국저작권시범도시·시범단위·시범단지(기지) 관리 방법'이 발표된 이래 청두(靑島)시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저작권시범도시로 지정되었음. 이를 위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저작권 사업에 약 1억 위안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하였음.

中 국가판권국, 칭다오市를 전국저작권시범도시 로 지정

- 국가판권국은 2011년 9월 9일 칭다오(靑島)시에서 개최된 '전국저작권시범도시·시범단위·시범단지(기지) 건설사업 추진 좌담회(推进全国版权示范城市示范单位和示范园区(基地)创建工作座谈会)'에서 칭다오시를 전국저작권시범도시(全国版权示范城市)로 지정한다고 발표함.
 - 또한, 전국저작권시범단위 및 시범단지로 '중국 경·방직도시 디자인저작권 관리 보호사무실(中国轻纺城花样版权登记管理保护办公室)', '안후이성 저작권거래센터(安徽省版权交易中心)', '칭다오 아이디어100 산업단지(靑島创意100产业园)', '난징시 쉬광소프트웨어산업기지(南京市徐庄软件产业基地)', '안후이성 저작권교육기지(安徽省版权教育基地)', '스촨대학교 문화산업연구센터(四川大学文化产业研究中心)', '청두 고신기술산업개발구(靑島高新技术产业开发区)', '상하이 장강첨단기술단지(上海张江高科技园区)'를 지정함.
- 전국저작권시범도시란 저작권 관련 법률·법규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저작권 보호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며, 효과적이고 규범적인 시장 운영을 통해 저작권산업이 해당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도시(직할시는 제외)를 가리킴.
- 전국저작권시범도시로 지정받고자 하는 도시는 국가판권국에 전국저작권시범도시 건설을 신청하여 동의를 받은 후 2년간 시범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국가판권국의 최종 심사를 거쳐 지정받게 됨.

○ 전국저작권시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7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① 저작권 보호를 우선과제로 삼고 저작권 보호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지역회의의 안건에 포함시켜야 함.
- ② 저작권 보호인력 및 조직 마련에 힘쓰고, 효과적으로 저작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자원을 보유해야 함.
- ③ 규모 있는 저작권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저작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 ④ 저작권산업 관련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SW를 포함한 저작물 등록건수가 매년 증가하거나 타 도시에 비해 우수해야 함.
- ⑤ 불법저작물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규범적 시장 질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 ⑥ 정부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정품을 사용하고, 기업의 정품 사용을 적극 권장해야 함.
- ⑦ 효과적인 저작권 홍보 및 교육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저작권 보호 분위기를 형성해야 함.

칭다오시, 막대한 자금 투입으로 문화산업 매출액 크게 증가

- 칭다오시는 2009년 ‘전국저작권시범도시·시범단위·시범단지(기지) 관리방법(全国版权示范城市示范单位和示范园区(基地)管理办法, 이하 ‘관리방법’)이 발표된 이래 청두(成都)시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저작권시범도시로 지정되었음.
 - ※ 국가판권국은 ‘국가지적재산권전략개요(國家知識產權戰略綱要)’를 수립하고 저작권 분야에서의 자원배치 최적화, 창조성 보호, 문화번영 촉진, 경제발전 추진 등을 위해 2009년 12월 29일 ‘전국저작권시범도시·시범단위·시범단지(기지) 관리방법’을 발표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칭다오시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저작권 사업에 약 1억 위안에 달하는 특별자금을 투입하였으며, 2010년도 문화산업 매출액은 칭다오시 전체 매출액의 7.5%인 42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5% 성장함.
- 칭다오시의 2010년도 저작권 등록건수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해 산둥(山東) 지방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10년 말 정부기관의 정품 SW 이용률은 100%로 조사됨.

(中國新聞出版總署, 國家版權局, 青島市版權局, 2011.9.25.)



中, 오프라인 불법저작물 단속 성과 및 10대 저작권 침해사건 발표

중국 신문출판총서는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프라인상의 불법저작물 단속 활동인 '지식재산권 침해 및 복제품 척결 전담행동'의 성과를 2011년 8월 31일에 발표하였음. 2011년 6월까지 8개월간 진행된 전담행동 결과, 총 3,381건의 저작권 침해사건을 처리했으며 침해액은 약 2억 8,300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국가판권국은 2010년 10대 저작권 침해사건을 발표하였음.

中 신문출판총서, 8개월간의 오프라인 불법저작물 단속 성과 발표

- 중국 신문출판총서(新闻出版总署)는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프라인 불법저작물 단속활동인 '지식재산권 침해 및 복제품 척결 전담행동(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专项行动, 이하 '전담행동')'의 성과를 2011년 8월 31일에 발표하였음.
 - 이번 전담행동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실시되었으며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고 있음.
- 2010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진행된 전담행동 결과, 각 지역의 저작권 관련 행정기관에서 입건 처리한 저작권 침해사건은 총 3,381건이며 침해액은 약 2억 8,300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사건 중 행정처리된 사건은 2,696건, 사법기관에 이송되어 처리된 형사사건은 179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수색·적발한 은닉장소는 1,548곳, 압수품은 313만 3,000개에 달함.
- 이번 전담행동에서 중국정부는 불법복제물 유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총 223,822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79,252개의 불법복제물 제작업체를 조사하였음.

- 이때 적발된 사건 중 행정처리된 사건은 402건, 사법기관에 이송되어 처리된 형사사건은 1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수색·적발한 은닉장소는 134곳, 압수품은 133만 개에 달함.
- o 또한 총 46만 7,738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25만 5,668개의 불법복제물 유통기업을 조사하였음.
 - 이때 적발된 사건 중 행정처리된 사건은 1,215건, 사법기관에 이송되어 처리된 형사사건은 146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수색·적발한 은닉장소는 529곳, 단속된 불법 노점은 6,194곳, 압수품은 1,203만 건에 달함.
- o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서 국가판권국은 '2010년 저작권 행정집행 10대 사건(2010年度版权执法10大案件)'을 발표하였음.
 - 이 10건의 저작권 침해사건 중 8건은 사법기관에 이송되어 처리되었으며, 2건은 행정처리되었음.
- o 8건의 형사사건은 '치스음악넷(骑士音乐网) 음악저작물 침해사건(안후이(安徽))', '9CAX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배포 사건(장쑤(江苏))', '완쑹넷(万松网) 어문저작물 침해사건(장쑤(江苏))', '취원밍(鞠文明) 등 저작권 침해사건(장쑤(江苏))', '허전위(何震宇) 불법복제CD 판매사건(톈진(天津))', '성다네트워크(盛大网络) 게임저작물 침해사건(상하이(上海))', '어문보(语文报) 불법 인쇄·판매사건(산둥(山东))', '9.20 불법복제도서 도매 사건(허베이(河北))'임.
 - 행정처리된 2건의 사건은 '마이다(麦达)회사 어문저작물 침해사건(저장(浙江))'과 '유스넷(悠视网) 영상저작물 침해사건(베이징(北京))'임.

中 국가판권국,
2010년 10대 저작권
침해사건 발표

(中國新闻出版总署, 國家版權局, 2011.9.25.)



中 칭다오市, 저작권 모범도시로 지정

국가판권국은 2011년 9월 9일 칭다오(靑島)시를 전국저작권시범도시로 지정한다고 발표함. 칭다오시는 2009년 '전국저작권시범도시·시범단위·시범단지(기지) 관리 방법'이 발표된 이래 청두(靑島)시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저작권시범도시로 지정되었음. 이를 위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저작권 사업에 약 1억 위안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하였음.

中 국가판권국, 칭다오市를 전국저작권시범도시 로 지정

- 국가판권국은 2011년 9월 9일 칭다오(靑島)시에서 개최된 '전국저작권시범도시·시범단위·시범단지(기지) 건설사업 추진 좌담회(推进全国版权示范城市示范单位和示范园区(基地)创建工作座谈会)'에서 칭다오시를 전국저작권시범도시(全国版权示范城市)로 지정한다고 발표함.
 - 또한, 전국저작권시범단위 및 시범단지로 '중국 경·방직도시 디자인저작권 관리 보호사무실(中国轻纺城花样版权登记管理保护办公室)', '안후이성 저작권거래센터(安徽省版权交易中心)', '칭다오 아이디어100 산업단지(靑島创意100产业园)', '난징시 쉬광소프트웨어산업기지(南京市徐庄软件产业基地)', '안후이성 저작권교육기지(安徽省版权教育基地)', '스촨대학교 문화산업연구센터(四川大学文化产业研究中心)', '청두 고신기술산업개발구(靑島高新技术产业开发区)', '상하이 장강첨단기술단지(上海张江高科技园区)'를 지정함.
- 전국저작권시범도시란 저작권 관련 법률·법규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저작권 보호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며, 효과적이고 규범적인 시장 운영을 통해 저작권산업이 해당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도시(직할시는 제외)를 가리킴.
- 전국저작권시범도시로 지정받고자 하는 도시는 국가판권국에 전국저작권시범도시 건설을 신청하여 동의를 받은 후 2년간 시범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국가판권국의 최종 심사를 거쳐 지정받게 됨.

○ 전국저작권시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7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① 저작권 보호를 우선과제로 삼고 저작권 보호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지역회의의 안건에 포함시켜야 함.
- ② 저작권 보호인력 및 조직 마련에 힘쓰고, 효과적으로 저작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자원을 보유해야 함.
- ③ 규모 있는 저작권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저작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 ④ 저작권산업 관련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SW를 포함한 저작물 등록건수가 매년 증가하거나 타 도시에 비해 우수해야 함.
- ⑤ 불법저작물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규범적 시장 질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 ⑥ 정부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정품을 사용하고, 기업의 정품 사용을 적극 권장해야 함.
- ⑦ 효과적인 저작권 홍보 및 교육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저작권 보호 분위기를 형성해야 함.

칭다오시, 막대한 자금 투입으로 문화산업 매출액 크게 증가

○ 칭다오시는 2009년 ‘전국저작권시범도시·시범단위·시범단지(기지) 관리방법(全国版权示范城市示范单位和示范园区(基地)管理办法, 이하 ‘관리방법’)이 발표된 이래 청두(成都)시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저작권시범도시로 지정되었음.

※ 국가판권국은 ‘국가지적재산권전략개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를 수립하고 저작권 분야에서의 자원배치 최적화, 창조성 보호, 문화번영 촉진, 경제발전 추진 등을 위해 2009년 12월 29일 ‘전국저작권시범도시·시범단위·시범단지(기지) 관리방법’을 발표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칭다오시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저작권 사업에 약 1억 위안에 달하는 특별자금을 투입하였으며, 2010년도 문화산업 매출액은 칭다오시 전체 매출액의 7.5%인 42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5% 성장함.

○ 칭다오시의 2010년도 저작권 등록건수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해 산둥(山東) 지방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10년 말 정부기관의 정품 SW 이용률은 100%로 조사됨.

(中國新闻出版总署, 國家版權局, 青島市版權局, 2011.9.25.)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유럽

獨, 대규모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키노' 폐쇄	76
英, 불법 DVD 제조업자 5명에 총 7년 10개월의 징역형 선고	78
英 저작권자들, 불법저작물 삭제를 위한 전문가 기구 설립 제안	80
佛 하도피, 삼진아웃제의 운영 성과에 대한 통계자료 발표	87
EU, 녹음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확대	89
유럽사법재판소, 해외 방송사를 통한 영국 프리미어리그 시청 허용	91



獨, 대규모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키노’ 폐쇄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경찰은 2011년 6월초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해 대규모 합동단속을 수행하였음. 독일에서는 하루 400만명이 방문하는 포털사이트인 키노(Kino.to)의 도메인을 압수하고 사이트를 폐쇄하였으며, 키노의 운영자를 비롯해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자 21명을 조사하였음

유럽 4개국,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경찰은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2011년 6월초에 온·오프라인상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아파트, 사무실, 데이터 센터 등을 대상으로 수색활동을 벌임.
 - 이번 단속은 지금까지 유럽에서 있었던 저작권 침해단속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독일에서의 단속 성과가 주목을 받고 있음.
- 독일에서는 250여명의 경찰관, 세관 공무원 및 컴퓨터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단속활동을 펼쳤으며,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뮌헨, 브레멘 등에서 13명의 용의자를 체포하였음.

獨, 키노 사이트 도메인 압수 및 사이트 폐쇄

- 이 과정 중 인터넷 포털사이트 키노(Kino.to)의 도메인을 압수하고 사이트를 폐쇄하였으며, 키노의 운영자를 비롯해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자 21명을 조사함.

※ 독일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노 사이트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트리밍 사이트임. 스트리밍 서버들과 파일 호스트들의 링크를 모아놓은 키노의 서버는 유럽 전역에 분산되어 있음. 사이트가 폐쇄되기 전까지 하루 약 400만명의 이용자가 키노 사이트를 방문하였고 약 6만 6천편의 영화와 30만편 이상의 TV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었음. 이 사이트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연간 100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됨.

- 독일 드레스덴(Dresden) 검찰청은 키노 사이트의 배후 집단을 저작권 침해의도를 가진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고, 침해 콘텐츠가 저장된 스트리밍 서버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유도했을 것이라 추정함.
- 한편, 독일저작권침해방지협회(Gesellschaft zur Verfolgung von Urheberrechtsverletzungen; 이하 GVU)의 전문가들은 키노 사이트의 이용자에게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이번 단속에서 경찰 측에 협력한 GVU는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에 의해 설립된 저작권 침해방지단체로서 지난 2008년 5월 키노 사이트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바 있음.
 - ※ 국내 소리바다사건에서 2007. 1. 25. 대법원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MP3 파일을 공유하는 이용자들의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 볼 수 없고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침해를 방조한 책임을 인정한 바 있음.

※ 독일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내용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나 그러한 복제에 필요한 전송 및 저장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제69조c). 따라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스트리밍을 제공한 사이트 운영자와 업로더들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함. 이용자의 경우 저작권 침해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시적 복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침해로 볼 수도 있을 것임.

- 독일 경찰의 이번 사이트 차단 후 GVU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가해졌으며, 드레스덴 검찰청 앞에서 스트리밍 사이트 차단 반대자들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음.
 - 독일 경찰은 키노 측이 GVU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함.
- 전문가들은 키노가 매우 인기가 있으며 이용자가 많은 사이트였기에 향후 유사한 불법 사이트 또는 플랫폼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음.

※ 참조

www.variety.com/article/VR1118038309?refcatid=13&printerfriendly=true, 2011.6.9

economicsnewspaper.com/policy/german/raided-kino-to-vibration-in-the-illegal-scene-32265.html, 2011.6.9

gigaom.com/video/german-rights-holders-kinoto/?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OmMalik+%28GigaOM%3A+Tech%29, 2011.6.13



英, 불법 DVD 제조업자 5명에 총 7년 10개월의 징역형 선고

영국 서더크(Southwark) 형사법원은 2011년 6월 21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범죄조직원 5명에게 총 7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음. 이들은 영국 최대 규모의 불법복제 DVD 제작공장을 운영하다가 런던경찰청과 경시청 및 저작권침해방지연합의 합동단속에 의해 적발되었으며, 1주일에 약 25만 개의 불법복제 DVD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하루 약 9만 5,000 파운드 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됨

英 최대 DVD 복제 공장 운영한 범죄 조직원 5명 징역형 선고

- 영국 서더크(Southwark) 형사법원은 2011년 6월 21일, 저작권 침해 및 불법복제 DVD 판매혐의로 기소된 범죄조직원 5명에게 총 7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음.
 - ※ 영국 저작권법 제107조 제1항은 판매 또는 대여의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제작하는 경우 등을 범죄로 보고, 약식재판에 의한 경우 6개월 이하, 정식재판에 의한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벌금 병과 가능)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들은 영국 최대 규모의 불법복제 DVD 제작공장을 운영하다가 2009년에 런던경찰청(City of London Police)과 경시청(Metropolitan Police) 및 저작권침해방지연합(Federation Against Copyright Theft; FACT)의 합동단속에 의해 적발되었음.
 - 합동단속반은 웹블리(Wembley)와 사우스홀(Southall) 지역을 급습하여 대규모 인쇄기와 DVD 복제장치 440개, 불법복제 DVD 6만장을 적발하였으며, 이때 압수된 장비만 수백만 파운드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짐.
 - ※ 저작권침해방지연합(FACT)은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로부터 영국의 영화 및 방송 저작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1983년에 설립된 단체로서 온·오프라인상에서 법집행 기관들과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대량 생산 설비와 정교한 유통망을 통해 하루 약 9만 5,000 파운드 수익

- 당시 런던에서는 1주일에 약 100만 개의 불법복제 DVD가 유통되고 있었는데, 이 범죄조직은 1주일에 약 25만 개의 불법복제 DVD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하루에 약 9만 5,000 파운드 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정교한 불법복제물 유통망을 구축·운영하였는데, 이 조직이 템트퍼드(Deptford)와 루이섬(Lewisham) 지역에 위치한 15곳의 판매점을 통해 불법복제 DVD를 배포하면, 각각의 판매상들이 이를 구매하여 런던과 영국 남동부 지방에 유통시켜왔던 것으로 조사됨.
- 런던경찰청의 데이브 에반스(Dave Evans) 경감(chief inspector)은 범죄자들이 불법복제물을 판매하기 위해 인구수가 많은 도시를 선호하고 있으며, 범죄로 인한 수익금은 또 다른 범죄행위에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함.

(FACT, 2011.6.22)



英 저작권자들, 불법저작물 삭제를 위한 전문가 기구 설립 제안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의 에드 바이지(Ed Vaizey) 장관은 2011년 7월, 런던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영국의 ISP들이 아직까지는 자발적으로 필터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미국 ISP들의 자발적 필터링 조치에 대한 협의가 영국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함.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저작권자들은 '전문가 기구 (expert body)' 를 설립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英 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 미국 저작권 경고 시스템의 긍정적 영향 예견

-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의 에드 바이지(Ed Vaizey) 장관은 2011년 7월, 런던에서 열린 지식소비자전자컨퍼런스(Intellect Consumer Electronics Conference)에서 미국의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 System)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
- 에드 바이지 장관은 영국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ISP)이 아직까지는 자발적으로 필터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ISP의 자발적인 필터링 노력이 영국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함.
 - ※ 영국의 디지털경제법(Digital Economy Act; DEA)의 주요한 입법목적은 P2P서비스로 인한 불법저작물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었지만, 이와 더불어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항의 신설 및 불법저작물을 방치하는 ISP에 대해 저작권자 및 콘텐츠 제공자들(CPs)이 금지명령(injunction)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 에드 바이지 장관의 이번 발언에 대해 유럽디지털권리(European Digital Right; EDRI) 전문가들은 바이지 장관이 인터넷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과 유사한 성격의 기구 설립 등을 언급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보다 강력하게 인터넷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英 저작권자들,
불법사이트 폐쇄 및
불법저작물 삭제를
위한 '전문가 기구'
설립 제안

-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저작권자들은 '전문가 기구(expert body)'를 활용해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저작권자들은 '전문가 기구'가 웹사이트의 차단여부를 결정하고 불법저작물을 방치하는 ISP에 대해 금지명령(injunction)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자 제안하였음.

(EDRI Press Release, 2011.7.13)



英, 지식재산 체계 혁신을 위한 하그리브스 권고안 수용

영국정부는 2010년 11월 지식재산(IP) 산업의 성장을 위해 IP 체계/framework의 혁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이 작업을 카디프 대학(Cardiff University)의 이안 하그리브스(Ian Hargreaves) 교수에게 의뢰하였음. 하그리브스 교수는 영국의 IP 체계, 특히 저작권 분야의 경우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11가지 혁신방안을 제시함. 이에 영국정부는 동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수용한다는 검토의견서를 2011년 8월 3일에 발표하였음.

英, 지식재산 체계의 혁신을 위해 방안 마련

- o 영국정부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 산업의 성장을 위해 IP 체계/framework의 혁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010년 11월 밝히고, 카디프 대학(Cardiff University)의 이안 하그리브스(Ian Hargreaves) 교수에게 의뢰하여 검토 작업에 착수함.
- o 2011년 5월 18일, 하그리브스 교수는 검토 결과를 반영한 보고서인 '디지털 기회 : 지식재산 및 성장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Digital Opportunity : an Independent Review of IP and Growth; 이하 '하그리브스 보고서')'를 발표함.
 - 이 보고서는 영국의 IP 체계, 특히 저작권 분야의 경우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11가지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o 영국정부는 이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하그리브스 교수의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2011년 8월 3일에 발표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英 정부,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설립 등 총 11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① 경제성장에 중요한 IP

- 하그리브스 교수 권고안 : IP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의 IP법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힘.
 - 또한 필수적인 의학 분야, 문화적·상업적으로 유용한 분야 및 현실화되지 못한 사업 아이디어 등 방치되었던 새로운 IP 영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영국정부 검토 의견 : IP관련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의 장벽을 낮추고,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성장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방치된 IP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힘.

② 시대에 뒤쳐져 조정이 필요한 IP 체계

- 하그리브스 교수 권고안 : 새로운 형태의 혁신과 창의성 및 기술에 적응하기 위해 IP 체계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복제가 용이해진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분야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영국정부 검토 의견 : 디지털 환경 속에서 복제의 용이성과 관련된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미래의 또 다른 변화에 대비해 IP 체계를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밝힘.

③ 실증적인 정책 마련

- 하그리브스 교수 권고안 : IP관련 정책이 과잉 로비 및 부족한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적의 IP 체계 마련을 위해 국제적 수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힘.
 - 영국이 IP분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중국, 인도 등의 신흥국가들이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설명함.
- 영국정부 검토 의견 :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이하 ‘IPO’)의 경제팀을 강화하고 2012년부터 관련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며 기업 및 다른 기

관과의 공조 하에 실증 분석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힘.

- 영국정부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공정성 및 사회적 영향에도 초점을 두고 IP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함.

④ 저작권 라이선스를 촉진하고 창조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실현할 디지털저작권거래소

- 하그리브스 교수 권고안 : 저작권자들은 개별적으로 자신의 저작권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라이선스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 따라서 기업과 개인 이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라이선스 거래를 할 수 있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Digital Copyright Exchange)를 설치한다면 효율적인 라이선스 거래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힘.
- 영국정부 검토 의견 : 성공적인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을 위해 매수인(licensees) 및 매도인(licensors) 모두를 위한 가치 마련이 중요하며, 공공(정부)저작권물(Crown copyright material)을 거래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⑤ 저작권 라이선싱을 현대화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

- 하그리브스 교수 권고안 : 영국 라이선싱 단체의 저작권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또한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가 EU 단일시장의 형성을 위해 제시한 '국경을 초월한 라이선싱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 영국정부 검토 의견 : EC가 제시한 '국경을 초월한 라이선싱 체계'를 지지한다고 밝힘. 이와 함께 고아(저작권자 미확인)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확대된 집중허락체계에 대한 계획안을 제시할 예정임.
 - ※ '확대된 집중허락제도'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 확대와 편의 제고를 위해 저작재산권을 위탁하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도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opt out) 관리를 중단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교육,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음.

⑥ 사적인 용도이거나 저작권의 근본적인 목적을 해하지 않는 경우 복제를 합법으로 인정할 것

- 하그리브스 교수 권고안 : 현행 저작권법상의 규제가 지나치며, EU차원에서 저작권에 대한 예외범위를 넓히는 것이 영국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영국정부 검토 의견 :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고 사적복제의 예외규정을 정리한 계획안을 2011년 중 제시할 계획임.

⑦ 입법적·규범적 체계의 미래 구축

- 하그리브스 교수 권고안 : 저작권의 예외규정이 영국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므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EU차원의 확대된 예외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영국정부 검토 의견 : 새로운 기술에도 적용 가능한 EU차원의 탄력적인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힘.

⑧ 변화하는 환경에 적용 가능한 특허 및 디자인 체계 마련

- 하그리브스 교수 권고안 : IP와 디자인산업에 관한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함.
- 영국정부 검토 의견 : 프랑스와 독일보다 영국의 디자인 등록 수준이 저조한 이유, 디자인과 혁신과의 관계 정립 등에 관한 조사를 IPO에게 위탁함.

⑨ 효과적인 법 집행을 위해서는 교육과 효율적인 시장, 적절한 집행체계 및 현대적 법체계가 필요

- 하그리브스 교수 권고안 : 효과적인 IP 집행체계는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요인이며, IP 침해 문제에 있어서 침해 증거의 수집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균형있고 효과적인 법 집행을 위해 영국정부의 집행능력 향상이 필요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이 적절해야 한다고 밝힘.

- 영국정부 검토 의견 : 영국 및 글로벌 차원에서 효과적인 IP 집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신뢰성있는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표명함.
- 또한 정부 및 집행기관은 산업계와 협력하여 디지털 시장을 위해 법 체계를 발전시키고 조직적인 IP 범죄를 저지하며 증거 수집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10 IP의 잠재성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 하그리브스 교수 권고안 : IP 활용 분야(IP-using sector)에서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중소기업들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힘.
- 영국정부 검토 의견 : 소규모 IP기업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법적·상업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IP 체계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안을 2011년 말에 IPO를 통해 제시할 예정임.

11 기술 및 시장 변화에 적합한 IP 체계 형성을 위해 IPO의 변화가 필요

- 하그리브스 교수 권고안 : IP관련 결정들이 향후에는 증거에 입각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한 IPO의 역할을 강조함.
- 영국정부 검토 의견 : 혁신과 성장, 시장 경쟁력의 증진, 증거자료의 이용가능성 증대, 기업 및 법원에서의 저작권법 적용의 명확화 등을 위해 IPO의 역할 방안에 관한 계획안을 2011년 말 또는 2012년 초에 제시할 예정임.

(IPO, 2011.8.3)

Global Copyright Protection

EUROPE



佛 하도피, 삼진아웃제의 운영 성과에 대한 통계자료 발표

프랑스 삼진아웃제의 집행담당기구 하도피(Hadopi)는 2010년 10월 최초로 저작권 침해자에게 경고 메일(email warning)을 발송한 이후부터 2011년 7월까지의 삼진아웃제 운영 결과를 발표함. 하도피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838만 건의 침해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약 10명의 사람들만이 3회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佛 저작권 침해방지기관 하도피(Hadopi), 삼진아웃제 운영 결과 발표

- 프랑스 삼진아웃제의 집행을 담당하는 하도피(Hadopi)는 2010년 10월에 최초로 저작권 침해자에게 경고 메일(email warning)을 발송한 이후로부터 2011년 7월까지의 삼진아웃제 운영 결과를 발표함.
 - ※ 하도피(Hadopi)는 프랑스 입법을 통해 설치된 기구로써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자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 침해방지기관(la 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oe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을 의미함. 하도피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경고 조치임. 인터넷 이용자가 하도피로부터 3회 경고를 받게 되면 인터넷 중단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하도피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838만 건의 침해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47만 명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1회 경고를 받았고, 2만 명이 2회 경고를 받았으며, 약 10명의 사람들만이 3회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하도피 측은 침해자들에게 보다 많은 경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삼진아웃제의 목적이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기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따라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이용방식을 변화시킬 시간을 주기 위해 두 번째와 세 번째 경고 조치를 발송하는 것은 당분간 보류하고 있다고 밝힘.

佛, 3회 경고시
1,500유로의 벌금
또는 1개월 이하의
인터넷 이용중단

- 한편, 정확한 침해수치 파악을 위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이하 'ISP')는 침해자의 IP주소를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 100만 건의 주소공개 요청이 있었다고 언급함.
 - 이에 덧붙여, 삼진아웃제 적용을 위한 현재의 집행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한계를 보여 왔으나, 2011년 말부터는 보다 원활히 운영될 것이라고 밝힘.
- 하도피는 삼진아웃제에 따라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은 인터넷 이용자들 중 이메일을 통해 1회 경고를 받은 이용자들의 7%,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2회 경고를 받은 이용자들의 15%가 전화 문의 등을 통해 경고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함.
 - 경고에 대해 분노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술적인 정보(technical information)에 대해 문의하는 정도의 반응을 보임.
 - 컴퓨터를 켤 때 P2P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시작되어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물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현재까지 약 10명의 이용자가 세 번째 경고를 받았고, 그들 중의 일부는 삼진아웃제의 최종적인 조치로써 인터넷 접속이 차단될 수 있다고 밝힘.
 - 3회 경고를 받은 이용자들에게는 별도의 해명 기회가 주어지며,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판사는 1,500유로 이하의 벌금이나 1개월 이하의 인터넷 이용중단을 명령할 수 있음.
- 저작권 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향후 보다 원활한 처리를 위해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음.

※ 참조

arstechnica.com/tech-policy/news/2011/07/french-agency-were-swamped-with-three-strikes-complaints_ars, 2011.7.15

gpb.org/news/2011/07/15/french-government-reported-to-struggle-with-internet-copyright-complaints, 2011.7.15

Global Copyright Protection

EUROPE



EU, 녹음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확대

유럽연합(EU)은 2011년 9월 12일 녹음(sound recording)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할 것이며, 향후 2년 이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힘. 이와 더불어 EU지침에 음반사가 수익의 20%를 1년에 1회 이상 실연자들에게 보상하고, 추가적으로 연장된 저작권 보호기간 동안에도 음반사와 실연자 간 약정된 저작권료 및 기타 혜택이 실연자에게 주어지도록 규정함

EU 녹음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 유럽연합(EU)은 EU지침에서 작곡가, 작사가, 영화제작자 및 영화대본작가 등의 저작권을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 이후 70년간 보호해 왔으나, 실연 및 음반제작과 관련된 녹음(sound recording) 저작권은 음반이 제작된 해의 마지막 날로부터 50년간만 보호하고 있었음.
 - 이에, 음반사 및 실연자들은 녹음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70년 또는 95년으로 연장을 달라고 주장해 왔음.
- 유럽에서 녹음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자는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2008년 유럽집행위원회(EC)는 해당 저작권의 보호기간 연장을 제안하였으며, 2009년 4월 투표를 거쳐, 2011년 9월 12일 녹음 저작권의 보호기간 연장을 최종적으로 입법화하게 됨.
 - 이로써 보호기간이 종전의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향후 2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임.
 - ※ 상기 법안은 영국의 예술가이자 프로듀서 및 음악 연주가로서 녹음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을 위해 노력한 영국의 클리프 리처드(Cliff Richard) 경의 이름을 따서 일명 ‘클리프 법(Cliff’s Law)’이라고 불리고 있음.

- 음반사 측은 애초 주장한 95년의 보호기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70년으로 연장된 보호기간에 만족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얻을 수익을 보다 나은 음반제작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1962년에 발표한 비틀즈와 롤링스톤스의 음반은 2012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보호기간의 연장으로 관련 음반사들은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
- ‘클리프법’은 실연자와 작곡·작사자 간 저작권 보호기간의 차이를 좁히고, 공연권의 보호수준을 높임으로써 음악 흥행에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실연자에 대한 인식을 보다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EU, 제작사의 수익 배분 등 실연자를 위한 추가 지침 마련

- EU는 추가적인 지침을 마련해 음반사가 매년 수익의 20%를 연 1회 이상 실연자에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각 EU회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여 배분하도록 함.
- 한편, 실연자가 계약을 통해 저작권을 음반사에게 위임한 경우, 추가적으로 연장된 저작권 보호기간 동안에도 음반사와 실연자 간의 약정된 저작권료 및 기타 혜택이 실연자에게 주어지도록 규정함.

※ 참조

www.billboard.biz/bbbiz/industry/publishing/eu-extends-copyright-term-to-70-years-1005348552-story, 2011.9.12.
 www.wired.co.uk/news/archive/2011-09/08/eu-copyright-extension, 2011.9.8.
 www.bbc.co.uk/news/technology-14829373, 2011.9.7.
 www.macca-central.com/news/3629/, 2011.9.9.

Global Copyright Protection

EUROPE



유럽사법재판소, 해외 방송사를 통한 영국 프리미어리그 시청 허용

영국의 주점(pub)들이 보다 저렴하게 축구경기를 시청하기 위해 그리스 방송사의 방송을 이용한 것에 대해 프리미어리그축구연합(FAPL)은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함. 2011년 10월, 유럽사법재판소는 개인 시청자가 해외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타국의 TV수신카드를 구입하여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주점(pub)이 해당 카드를 이용해 경기를 방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함.

英, 해외 방송사를 통한 축구경기 수신 논란 확대

- 프리미어리그축구연합(Football Association Premier League, 이하 'FAPL')은 잉글랜드 축구리그인 프리미어리그를 운영하고,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대한 방송권을 라이선스하고 있음.
- FAPL은 방송사들에게 해당국 내에서만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방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시청자들은 거주국 내의 방송사가 전송하는 경기만 시청할 수 있었음.
 - FAPL은 시청자들이 타국의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위성신호를 암호화하여 전송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암호해독을 금지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주점(pub)들이 저렴한 가격에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시청하기 위해 그리스 방송사의 TV수신카드(암호해독장치)를 구입하고 연간 약 800파운드의 시청료를 그리스 방송사에게 지급함에 따라 FAPL과의 갈등이 야기됨.
 - 그리스의 방송사는 영국 내 방송권을 가진 스카이(Sky)사의 주점용 라이선스 비용보다 약 10배가량 저렴한 시청료를 책정하고 있음.

유럽사법재판소, 개인적 시청을 위한 해외 TV수신카드 이용 허용

- FAPL은 외국 방송사의 TV수신카드를 통해 저렴한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가 자신의 방송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잉글랜드 및 웨일즈 법원에 제기하였고, 이들 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에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의뢰하였음.
- 2011년 10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시청자가 해외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타국의 TV수신카드를 구입하여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주점(pub)이 해당 카드를 이용해 경기를 방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함.
- 유럽사법재판소는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일괄적 금지는 EU경쟁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배타적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저작권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였고, 그로 인해 인위적인 가격 불균형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함.
 - 또한 해외 TV수신카드의 수입·판매·이용을 금지하는 국내법은 서비스 제공의 자유와 지식재산권 보호의 목적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함.
- 한편, 유럽사법재판소는 개인이 아닌 영리적 사업자인 주점이 해외 TV수신카드를 통해 고객이 주점 내에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다만 프리미어리그 경기의 편집물 및 다양한 그래픽을 포함한 녹화물은 저작물로 간주되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으나, 프리미어리그 경기 자체는 지적 창작물이 아니므로 EU저작권지침 상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경기 방송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주점(pub) 등에서 방송저작물을 상영하는 것은 권리자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공중(public)에 대한 전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EU저작권지침 상의 ‘공중에 대한 전달(communication to the public)’에 해당하며 이 경우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밝힘.
 - ※ 전달(communication)이란 음반 등에 고정된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을 공중에게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유럽의 인접권지침(Related Rights Directive) 제8조(3) 및 WPPT (WIPO 공연 및 음반 조약) 제2조(g)는 정의하고 있음.

- 이번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향후 유럽의 방송 라이선스 계약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UROPA, 2011.10.4.)

GLOBAL COPYRIGHT PROTECTION

국제기구

국제상공회의소, 저작권 침해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발표	96
WIPO, 서아프리카 국가들을 위한 온라인 음악저작권 관리시스템 구축계획 발표	99
WIPO, 공연권 관련 국제조약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2012년 개최	101



국제상공회의소, 저작권 침해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발표

국제상공회의소(ICC)는 OECD 및 각국의 조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2008년 불법복제물의 거래규모와 온라인 상 침해규모 및 저작권 침해의 영향력을 분석·정리한 ‘위조 및 침해가 세계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평가’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에서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불법복제물의 규모가 2,870억 달러 이상이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이 7,750억 달러에 달한다고 나타남

국제상공회의소, 저작권 침해 영향력 평가 보고서 발표

-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2011년 2월, ‘위조 및 침해가 세계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평가(Estimating the Global Economic and Social Impacts of Counterfeiting and Piracy)’ 보고서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OECD 및 각국의 조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2008년 불법복제물의 거래 규모와 온라인 상 침해규모 및 저작권 침해의 영향력을 분석·정리한 것임.

국가 간 거래되는 불법복제물 규모는 2,870억~3,620억 달러로 추정

- OECD는 70개국의 관세기관 자료와 국제무역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 간 거래되는 불법복제물의 규모를 2005년에 2,000억 달러, 2009년에는 2,500억 달러로 추정한 바 있음.
- 국제상공회의소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과 유럽에서의 세관 몰수율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을 불법복제물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OECD의 추정액을 조정함.

- 이에, 국제적으로 약 375억 ~ 1,125억 달러 가량의 침해물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2008년의 불법복제물의 국제거래 규모는 약 2,870억 ~ 3,62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힘.

국가 내 생산·
소비되는 불법복제물
규모는 1,400억 ~
2,150억 달러로 추정

- 국제상공회의소는 각국에서 생산되어 자국내에서 소비되는 불법복제물의 규모가 2008년 기준 약 1,400억 ~ 2,15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음.
- 한편, 이 조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 일본특허청의 조사에서는 각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소비되는 불법복제물의 규모가 약 1,1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나타남.
- 일본특허청은 아시아에서 생산된 불법복제물들이 자국 내에서 소비되기보다 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아시아 이외의 국가들에서는 자국 내에서 소비되는 경향이 높다고 밝힘.

〈표〉 사이트 유형별 불법 음악물 이용경험

(단위 : %)

구 분	자국 내 소비	수 출
아시아	34	66
아시아 제외	55	45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규모는 최대 750억
달러로 추정

-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로 인해 음악과 영화, SW 산업 등에서 많은 손실이 있어 왔으며, 이는 기술 발달과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 및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발달에 기인함.
- 이번 보고서에서는 2008년 기준 온라인 저작권 침해규모가 음악 분야에서 약 170억 ~ 400억 달러, 영상 분야 약 100억 ~ 160억 달러, SW 분야에서는 15억 ~ 190억 달러에 달한다고 나타남.
- 즉, 온라인 저작권 침해규모는 285억에서 최대 75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됨.
- ※ 온라인 저작권 침해규모는 온라인 상에서 이용 가능한 불법복제물의 가치를 합산한 수치임.

저작권 침해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은 7,750억
달러로 추정

- 2008년에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은 G20 국가에서
만 약 1,25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 비용에는 약 775억 달러의 세금 손실과 250억
달러의 범죄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저작권 침해로 인해 전 세계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2008년에 약 7,750억 달러,
2015년에는 약 2배에 달하는 1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보고서는 고용 측면에서도 매년 약 250만 명의 일자리가 침해로 인해 사라지고 있으
며, 침해 우려가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

(ICC, 2011.2)

Global Copyright Protec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PO, 서아프리카 국가들을 위한 온라인 음악저작권 관리시스템 구축계획 발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제3회 세계저작권총회(World Copyright Summit)’에서 서아프리카 11개국의 음악저작권 관리를 위한 통합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함. 11개국은 베닌,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감비아, 가나, 기니,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토고이며, 플랫폼이 구축되면 통합적인 저작권 등록과 정보관리가 가능해지게 됨

WIPO, 서아프리카 11개국의 음악 저작권 관리를 위한 통합디지털플랫폼 구축계획 발표

- 현재 서아프리카에서는 저작권 관리가 국가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행정적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각각의 국가에서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함.
- 또한 영화제작자, 라디오제작자, 방송제작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업체 등이 서아프리카의 음악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물의 권리정보 확인이 어려워 저작자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음.
- 이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의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2011년 6월 개최된 ‘제3회 세계저작권총회(World Copyright Summit)’에서 서아프리카 11개국의 음악저작권 관리를 위한 통합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세계저작권총회는 2년마다 국제저작권협회(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 CISAC)에 의해 개최되며, 올해에는 6월 7일부터 이틀간 브뤼셀에서 열렸음.
- WIPO의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11개국은 베닌(Benin),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 코트디부아르(Cote d'Ivoire), 감비아(Gambia), 가나(Ghana), 기니(Guinea),

말리(Mali), 니제르(Niger), 나이지리아(Nigeria), 세네갈(Senegal), 토고(Togo)임.

온라인을 통한
통합적인 저작권
등록 및 정보관리
가능

- 향후 구축될 통합디지털플랫폼은 WIPO의 자체 소프트웨어인 ‘WIPOCOS (WIPO Software for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를 이용한 웹기반 시스템으로, WIPO는 플랫폼 개발을 위해 구글(Google)사와 협력하게 됨.
- 통합디지털플랫폼이 구축되면 국가별로 저작권을 등록할 필요 없이 온라인상에서 한꺼번에 저작권 등록이 가능해지며, 저작물 이용자들은 표준화·간소화된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음악저작권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저작권 관리를 위한 행정비용이 감소하고 저작권자 정보, 저작권료 분배현황, 저작물 이용현황 등의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WIPO, 2011.6.8.)

Global Copyright Protec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PO, 공연권 관련 국제조약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의 2012년 개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00년부터 실연자들의 권리 강화를 위해 공연권에 관한 국제조약 제정 협의를 추진해 왔음. 공연권에 관한 국제조약은 총 2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1년 6월 최종 쟁점이었던 실연자 권리의 양도 문제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최종안이 마련됨. WIPO는 2012년에 상기 국제조약의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조약마련 절차의 최종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함.

WIPO, 실연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조약 마련 추진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는 실연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조약 제정 협의를 2000년부터 추진해 왔음.
 - 실연자들의 공연물이 해외에서 무단으로 이용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보상 체계가 부재함에 따라, 실연자 권리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의 제정이 추진되었음.
- 최근 WIPO가 마련한 공연권에 관한 조약은 총 2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개의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실연자의 권리를 제작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가별 이견으로 인해 최근까지 공연권의 양도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 2011년 6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상임위원회’에서 공연권의 양도와 관련해 각국이 자국 법률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동 조약의 최종안이 마련되게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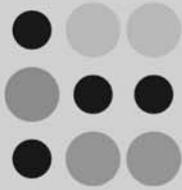
조약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내년도
개최 결정

- 2011년 9월 29일, WIPO정기총회에서 회원국들은 공연권에 관한 국제조약의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를 2012년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조약마련 절차의 최종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함.
- 새롭게 제정될 국제조약은 ‘로마조약(1961년)’이나 ‘WIPO 실연·음반조약(WPPT)(1996년)’이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못한 시청각 공연자들의 권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참조

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11/article_0024.html 2011.10.15

kluwercopyrightblog.com/2011/10/07/wipo-international-performer%E2%80%99s-right%E2%80%99s-treaty-revived/ 2011.10.15



GLOBAL COPYRIGHT PROTECTIO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 - IN

미국 디지털밀리터리저작권법(DMCA) 상 UCC 삭제통지의 남용을 막기 위한 요건	106
유튜브의 '저작권 보호', 기업과 저작권자 간 상생의 교훈 삼아야	112
저작권 침해를 노리는 트롤(troll)의 등장에 따른 해외 대응	115
중국 내 한국 방송콘텐츠 저작권 침해 원인과 대응방안	120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본 저작권 보호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	124
미국의 '저작권 경고 시스템' - 또 하나의 삼진아웃제?	129
한·EU FTA 발효가 저작권 보호에 미치는 득과 실	134
EU차원의 저작물 보호체계가 시사하는 전략적 대응점	138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상 UCC 삭제통지의 남용을 막기 위한 요건

김경숙 교수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1. 저작권 보호기술 유형

오늘날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디지털 스마트시대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화된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시기인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가장 많이 변화한 것은 통신 환경과 디지털 기기를 들 수 있는데, 특히 2008년 아이폰 출시이후로 스마트폰 사용자와 무선 네트워크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로 유비쿼터스 환경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시기이다.

디지털 기기의 성능과 이동성 향상은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가속시키고 다양한 기기와 환경에서도 같은 저작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N 스크린¹⁾ 서비스의 등장, 모바일 기기의 컴퓨팅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²⁾의 등장으로 책상 위의 저작물(Content on the Desk)에서 손 위의 저작물

(Content on the Palm)을 소비하는 시대가 되면서 저작권 보호기술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기술은 저작권법 제1장 제2조 제28호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저작권 보호기술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나 크게 6가지 범주로 나뉘볼 수 있다.

① 저작권 표시(Copyright Marking) 기술

저작권 표시 기술은 말 그대로 저작물에 저작권을 표시하는 기술이며, 표시하는 방법이 디지털 저작물에 적합하게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로써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로 널리 알려져 있는 기술이다.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저작권자의 정보를 저작물에 은닉하는 것이며, 저작물의 형태(오디오, 이미지, 비디오)에 따라서 다른 기술이 이용된다.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의 응용으로써 저작권자의 정보가

- 1) 하나의 콘텐츠를 TV나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기기의 스크린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2) 소프트웨어나 개발 플랫폼, 스토리지 등을 원격지에서 서비스함으로써 어떠한 환경, 어떠한 기기에서도 접근하여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아닌 구매자의 정보를 은닉하게 되면 불법유통되는 저작물에서 배포자를 추적할 수 있으며, 이를 디지털 포렌식마킹 기술이라고 한다.

② 필터링 기술

필터링 기술은 저작권법 제104조에서 특수한 유형의 OSP(Online Service Provider)에게 권리자가 요청하는 기술적 조치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필터링 기술은 저작권이 허용되지 않은 저작물의 유통(업/다운로드)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로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키워드 또는 금치어에 의해서 검색을 차단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저작물의 해시 값을 DB로 구축하여 동일한 해시 값을 가진 저작물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 세 번째는 저작물 인식기술을 이용하여 특징점 DB³⁾를 구축하고 동일한 특징점을 가진 저작물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이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 손쉽게 필터링 기술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특징점 인식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은 특징점 DB를 적절한 시점에 잘 구축하여 사전에 불법적인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다.

③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

DRM 기술은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저작물을 암호화함으로써 불법적인 유통자체를 막기보다는 저작물의 불법적인 이용을 제한하는 기술이다. 기술의 초창기에는 암호화된 키와 라이선스의 발급을 통하여 사용권한을 제어하는 협의의 DRM 기술로 이용되었

3) 저작물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특징이기 때문에 DNA 또는 핑거프린트라고도 함.

으나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자서명이나 해킹방지를 위한 기술이 조합되면서 광의의 DRM 기술로 넓히고 있다. 그러나 DRM의 강력한 보호수단 자체가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논란으로 DRM-free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술적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

④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기술

CAS는 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과 같이 유료방송채널에서 허가된 가입자만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시스템 기술이다. CAS는 DRM처럼 권한을 제어하는 것이지만 개별적인 권한 제어가 아닌 가입자 그룹에 따라 단순히 시청여부에 대한 권한을 제어하며, 스크램블이라는 방법으로 방송저작물을 보호한다. 그러나 CAS도 기술의 발전과 함께 DRM 기술과 유사해지고 있으며, CAS시장의 독과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D-CAS(Downloadable CAS)가 등장하였다.

⑤ 복제방지(Copy Protection) 기술

오프라인에서 공급되는 CD나 DVD와 같은 매체, 또는 컴퓨터나 셋톱박스에서 모니터나 TV 스크린으로 전송되는 신호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체나 신호를 통해서 전송되는 저작물을 복제해내는 것을 막기위한 기술이다. 기기의 인증과 매체 및 신호상의 저작물을 암호화하여 복제를 방지하는 기술이다. CD/DVD에서는 CSS⁴⁾를 이용하여 보호하며, 전송선로에서는 DTCP⁵⁾이나 HDCP⁶⁾라는 표준화된 기술을 이용하여 보호한다.

4) Content Scramble System, DeCSS라는 해킹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쉽게 복제가 됨.

5) Digital Transmission Content Protection

6) High-bandwidth Digital Content Protection

⑥ 저작권침해 추적 및 포렌식 기술

저작권침해 추적 기술은 인터넷 상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저작물을 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배포자를 추적하는 기술이며, 포렌식 기술은 저작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침해에 대한 증거획득 및 분석을 하는 기술이다. 저작권 침해유형이 첨단화되어감에 따라 이를 예방하는 기술뿐 아니라 사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술 분야로써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 해외 저작권보호 기술동향

저작권보호 기술을 가장 활발히 연구한 해외 선진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있다. 미국은 디지털 워터마킹 분야에서는 퍼듀대학을 비롯한 많은 대학연구소와 디지마크⁷⁾, 베란스⁸⁾라는 선두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IBM도 기술을 개발 보유하고 있다. DRM 기술 분야에서는 원천기술을 다량 확보하고 있는 인터트러스트가 있으며, 애플사의 Fairplay, 마이크로소프트의 WMRM 등 모든 DRM 기술은 인터트러스트의 원천성을 회피하기 어렵다. 필터링 기술 부분에서는 구글이 유튜브에서 ContentID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특징점 기반의 저작권 보호기술을 개발하여 선보이고 있으며, 그레이스노트⁹⁾와 오더블매직¹⁰⁾에서는 음악 특징점을 이용하여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CAS분야에서는 언론재벌

인 루퍼트머독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NDS와 나그라비전이 전세계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복제방지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연합하여 저작권보호 기술 표준을 만들어 냈다.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소는 MP3 음악에 디지털 포렌식마크를 삽입하여 P2P 네트워크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음악의 배포자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독일 국립 정보기술 연구소는 동영상 인증을 위한 오디오/비디오 워터마킹 기술을 연구하였다. 네덜란드의 필립스 연구소에서는 디지털 시네마 용으로 CineFence라는 비디오 워터마킹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오디오 특징점 인식기술을 개발하여 그레이스노트사에 이전하였다.

일본은 세계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자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해 있기 때문에 IBM Japan과 NEC에서의 워터마킹 기술개발뿐 아니라 소니는 미국법인 등을 이용해 인터트러스트와 그레이스노트를 인수하였고 영국에 있는 미쓰비시에서는 이미지/비디오 특징점 인식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기술의 특징은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등장으로 단순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iTunes를 통해서만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업로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기에서 PC와 같은 외부 기기로의 저작물 전송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iTunes에서 구매한 저작물을 아이클라우드에 저장해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외란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원천적으로

7) <http://www.digimarc.com/>

8) <http://www.verance.com/>

9) <http://www.gracenote.com/>

10) <http://www.audiblemagic.com/>

막으려하고 있다.

3. 국내 저작권 보호기술 현황 및 수준

국내에서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 KAIST, 상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의 대학 연구기관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저작권 표시기술 부분에서는 KAIST와 상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마크애니, 인포마크, CK&B가 다양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DRM 기술은 상용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마크애니, 파수닷컴 등의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면 다양한 솔루션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특수한 유형의 OSP들이 채택하고 있는 특징점 기반의 필터링 기술은 국내 시장의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엔씨즈와 뮤레카가 음악과 동영상 특징점 인식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KAIST가 원천기술 개발을 완료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들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DRM-free 서비스의 도입 이후에 대학과 연구소, 기업에서 각 분야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CAS나 복제방지기술 분야에서는 기술개발이 미진하다. 이는 세계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후발 기술의 진입을 막기 때문에 기술수요가 낮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서 국내 저작권 보호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¹¹⁾에서 미국 등 경쟁상대국과의 상대적 수준과

절대적 수준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 기술은 전자·정보통신분야의 융합형 콘텐츠 및 지식 서비스 기술 분야에 속하며, 2008년도에는 미국의 기술수준이 최고기술 대비 79.8,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66.5로 선진미국의 기술대비 83.33% 수준으로 3.8년의 격차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도에는 미국의 기술수준이 79이고, 우리나라는 65.8로 미국대비 83.29% 수준에 기술격차는 2.7년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결과에서 흥미로운 것은 2008년에 비해서 2010년에는 저작권 보호기술의 수준이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미국대비 기술수준은 변화가 거의 없고 기술격차는 1.1년이 줄어들었다. 이는 스마트기기 환경에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결과로 분석된다.

〈표 1〉 2010년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 소요시간

구분 국가	기술수준 (%)	소요시간 (%)	기술격차 (%)
한국	65.8	10.1	2.7
미국	79.0	7.4	0.0
일본	67.6	9.6	2.2
EU	69.7	8.9	1.5

※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저작권 보호기술 수준 설문조사 결과

4. 저작권 보호기술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술수준조사 결과에서 보면 2008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기술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절대적인 기술수준은 오히려

11) <http://techinfo.ntis.go.kr/KoreaTechLvlStatComp/Manage.do>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기술격차의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조사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술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표 2〉 2010년 기술격차 추세

국가	축소(%)	현행유지(%)	확대(%)
미국	21	23	56
일본	0	23	77
EU	0	44	56

※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저작권 보호기술 수준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가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특히 전문가들은 부족한 연구개발 투자로 인해 향후 선진국에 비해서 저작권 보호기술 분야의 기술격차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작권 보호기술 분야 전문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선진국과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개발예산은 일 년에 3~4개 정도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둘째로 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1단계의 복수 연구팀 선정 및 2단계 단일 연구팀 선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의 연구개발 체계에서는 한 과제에 단일 연구팀을 선정함으로써 그 결과물에 대한 실패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결국 연구과제가 성공해야 하는 안전한 과제를 선호하게 되며, 도전적인 연구 과제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1단계에서 동일 연구과제에 대해서 복수 연구팀을 선정지원하고 1단계 결과를 경쟁심사하여 2단계 단일 연구팀을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로 연구책임자의 연구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예산 집행에서 연구책임자의 자율성은 거의 없으며, 예산 집행과 관련된 많은 서류처리와 잦은 연구진도 점검 및 보고로 인해서 연구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물론 예산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연구비가 신용카드로 집행되는 만큼 예산집행에 대한 연구책임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결과물의 품질관리에 집중하여야 한다. 연구비 집행 투명성이라는 빈대를 잡기 위해서 연구결과물의 품질이라는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로 인력양성에 대한 노력과 전문 인력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다. 대부분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개발 인력은 소프트웨어개발 인력이다. 많은 인력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으로부터 관련솔루션 개발에 투입될 때, 인력의 등급에 따라서 일당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비용 산정을 함으로써 업계와 전문인력을 일용직 취급을 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개발 사이트에 상주하는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근무여건을 열악하게 만들고 기업은 최소의 이윤만을 얻음으로써 연구개발에 투자할 여력을 상실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인건비로 계산되는 저작권 보호기술 솔루션구축을 적정한 기술수준에 따른 기술비용으로 계산하여 우수한 인력에 의해서 적정한 이윤을 얻고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

책을 마련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저작권 보호기술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가 추진되어야한다. 앞서 해외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벤처업체들이 자금력이 풍부한 글로벌 기업에 인수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제품을 공급하는 환경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 대기업이 좋은 인력을 모두 흡수함으로써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대기업이 다시 개발하는 중복투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1996년 CDMA 기술의 상용화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IT강국이라고 자부해왔다. 그러나 이제 하드웨어의 시대는 더 이상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의 시대로 변화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을 탄생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애플의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구글의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우리나라에서 창업하였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 몇 년 전 안드로이드 개발사가 우리나라 굴지의 S전자를 방문하여 자신의 회사를 인수하라고 하면서 무료로 배포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소개하였으나 8명에 불과한 회사라고 무시를 당하고 돌아갔고, 결국은 5천만 달러에 구글이 인수하여, 오늘날 스마트기기 운영체제의 양대 산맥으로 성장하였다. 미래를 보는 눈과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가 저작권 보호기술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연목구어(緣木求魚)가 되지 않길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유튜브의 ‘저작권 보호’, 기업과 저작권자 간 상생의 교훈 삼아야

손승우 |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I. 유튜브의 사이버 ‘저작권 학교’

미국 구글의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는 지난 4월 14일 자체 저작권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를 위한 사이버 ‘저작권 학교(copyright school)’를 개설하였다. 구글은 유튜브 내에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동영상을 업로드 한 이용자들에게 ‘저작권 학교’ 웹페이지로 가서 4분 39초의 교육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시청하고, 4개의 다지선다형 문제에 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동영상과 문제는 저작권 침해가 무엇이며, 그로 인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와 상영 영화의 녹화 등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이용자는 이 짧은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다시 유튜브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유튜브는 그간 명백한 저작권 위반 고지를 3차례 받게 되면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왔는데, 향후에는 이번에 개설된 ‘저작권 학교’에 참석하거나 또는 그동안의 합법적인 사이트 내에서의 활동 등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제재를 감해 주기로 하였다.

II.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해외 기업들의 노력

해외 인터넷서비스기업에 의한 저작권 보호 노력은 이번 유튜브의 시도가 처음이 아니다. 예를 들면, 2007년 파라마운트영화사와 MTV 등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거대 미디어기업인 비아콤(Viacom)이 유튜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묻는 10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UCC 사이트와 관련된 일련의 저작권 소송이 제기되어 왔다. 문제가 되었던 UCC 서비스의 동영상 저작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미국의 주요 미디어 및 인터넷기업들이 UCC 사이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UCC 사이트에 게시되는 동영상이 불법인지 여부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불법 콘텐츠에 대해서는 게재 전에 삭제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를 개발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당시 월트디즈니, 폭스엔터테인먼트그룹, 비아콤, CBS, NBC유니버설 등 미디어 기업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스페이스, 베오네트워크, 데일리모션 등 인터넷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였지만 세계 최대의 UCC 사이트인 유튜브를 운영

하고 있는 구글은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 생각건대, 그 이유는 당시 인기 UCC 중 20% 정도만이 순수 창작물에 해당하였으므로 나머지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할 경우 네티즌들이 대거 유튜브로부터 발길을 돌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그렇다고 하여, 구글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구글은 2007년 10월 저작권 보유자들의 동영상 및 음향 콘텐츠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콘텐츠 검증 기술인 ‘유튜브 비디오 확인’ 기술을 개발하여 서비스에 적용하였다. 또한 구글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사례를 통보받으면 신속하게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는 등 이른바 ‘통지와 삭제(Notice and Takedown)’ 조치를 충실히 취함으로써 미국의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구글, 애플은 물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대표적인 사업자인 페이스북(Facebook) 등이 안전하고 건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가장 엄격한 자체 심의규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애플의 경우 개발자들이 앱·콘텐츠 제작 시에 지켜야 할 앱스토어 리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신공격, 폭력, 포르노그래피,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등 콘텐츠 내용에 대한 자율규제를 통해 역기능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과 구글도 유해성이 있는 콘텐츠의 유통을 금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과거 2008년 12월 국내에서도 NHN·다음 등 포털 7개사가 ‘건강한 인터넷을 위한 포털자율규제협의회’를 출범시켜 인터넷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를

시도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해외 기업들은 불법복제를 통한 비용절감보다는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SAM)를 통해 비용절감과 수익창출의 효과를 더욱 크게 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서비스는 대규모 업무 중단을 가져올 수 있는 악성코드 감염이나 적절한 시점에 새로운 소프트웨어 구매 결정을 하여 중복 구입을 방지하고, 직원의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분쟁 등 예기치 못한 위험을 줄여주고 있다.

III. 유튜브 저작권 학교에 대한 소감

2005년 5월 채드 헐리(Chad Hurley)와 스티브 첸(Steve Chen)에 의해 설립된 유튜브는 최초의 ‘온라인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서 단시간 내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급성장하였다. 유튜브는 현재 전 세계 22개 국가 도메인과 19개 언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당 24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있고 매일 20억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구글은 동영상공유사이트와 관련된 일련의 계속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감당해야만 했다.

그동안 다른 인터넷서비스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유튜브도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통지와 삭제(Notice and Takedown)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등의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따르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런데 이번과 같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선 처음으로 저작권 위반자를 위한 저작권 관련 교육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법의 요구를 넘어

기업 스스로 저작권 보호 노력을 하였다든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일정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103조에서 OSP가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침해라고 여겨지는 복제물을 서비스사이트로부터 삭제하고 즉시 그 복제물을 복제·전송하는 자에게 삭제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관련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02조제1항에서 OSP가 저작물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행위를 중단시킨 경우에도 침해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동조 제2항에서 침해사실을 알고 그 행위를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듯이, 저작권 침해물이 이용자에 의해 교환되고 있는 사실을 인터넷서비스운영자가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감경·면책 규정과는 별개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OSP의 방조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유튜브가 이번에 개설한 저작권 교육은 통지와 삭제(Notice and Takedown), 기술적 보호조치 등과 함께 OSP의 방조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는 일이 중요한데, 이점에서 유튜브의 저작권 학교는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동영상의 내용이 저작권 침해와 그에 따른 책임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서 이용자로 하여금 거부감과 나아가 공포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관한 것과 함께 공유저작물의 안전한 활용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공정이용(fair-use)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해당 조문을 읽어주고, 처음에 등장인물이 해당페이지를 밀어내려다 실패하는 모습 등은 교육적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수정이 요구된다. 또한 이용자를 해적에 비유한 캐릭터를 등장시켜 저작권 침해 추정행위를 하게 되면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거나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 모든 콘텐츠의 무단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정확한 저작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튜브의 저작권 교육 콘텐츠의 내용이 저작권 침해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면서도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한다면 이용자들로부터 유튜브의 자발적 노력에 대한 신뢰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구글의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국내 인터넷서비스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저작권 침해를 노리는 트롤(troll)의 등장에 따른 해외 대응

손경한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I. 저작권 트롤의 정의

저작권 트롤(copyright troll)이라는 용어와 개념은 특허 트롤(patent troll)에서 유래하였는바 인터넷 및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2000년대 중반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6년 각각 구글을 제소한 블레이크 필드(Blake Field) 변호사와 Perfect 10社 두 당사자를 저작권 트롤이라 명명하였다. 저작권 트롤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받거나 그 관리를 신탁 받아 저작물 이용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격적이거나 기회주의적인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¹⁾ 저작권 트롤은 대규모 저작권 포트폴리오의 보유자인 저작권 포괄 라이선스(copyright blanket license) 회사, 권리자들의 단체로서 집단적으로 저작권자를 대변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신탁 받아 대신 권리를 행사하는 저작권관리신탁회사와는 구별된다.

II. 저작권 트롤의 유형 및 사례

1. 저작권 트롤의 유형에 관한 개설

저작권 트롤은 그 유형을 저작권 행사의 주체, 저작권 행사의 상대방, 저작권 침해의 객체인 저작물, 그리고 저작권 행사의 행태에 따라 이를 분류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은 각각 독립한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유형과 행태가 결합하여 저작권 트롤에 해당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획일적으로 저작권 트롤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저작권 행사의 주체를 기준으로 한 유형

가. 저작권침해소송전문회사의 일괄적 저작권 행사

저작권침해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집단이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다수의 피고를 상대로 일괄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유형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법률사무소에서 분사한 U.S. Copyright Group(USCG)社인데 허트로커(The Hurt Locker), 파 크라이(Far Cry), 와일드 울프(Call of the Wild) 등의 영화를 제작한 회사들을 대리하여 2010년 1만 4천명의 존 더즈(John Doe

1) http://en.wikipedia.org/wiki/Copyright_troll

s)²⁾를 상대로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동법원은 2010년 12월초 수 천 명의 피고가 관련된 2개의 사건에서 인적재판관할의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³⁾

나. 저작권침해소송전문회사의 개별적 저작권 행사

Stephens Media社는 미국 네바다주 「Las Vegas Review-Journal」의 발행인이었는데 몇 명의 변호사와 함께 Righthaven社를 설립하고 그 기사의 저작권을 양수한 후, 그 기사를 무단으로 인용 또는 전재한 웹사이트 운영자, 포럼 운영자 및 블로거들을 상대로 네바다 연방지방법원에서만 200건 이상의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Righthaven社는 제소를 통하여 침해자들의 손해배상책임과 도메인이름의 폐쇄를 위협하여 1인당 2,000~3,000달러의 합의금을 재빨리 받고 소를 취하해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⁴⁾

다. 유사권리자에 의한 저작권 주장

진정한 권리자는 저작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는데 그와 관계있는 유사권리자가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도

2) 2003년 RIAA는 저작권침해소송에서 피고들을 특정할 수 없자 우리나라로 치면 홍길동과 같은 가명인 John Does라는 이름으로 우선 피고들의 URL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제소하고 증거개시절차(discovery)의 일환으로 이용자의 실명을 보유하고 있는 Time Warner and Comcast 등의 OSP에게 신원확인을 시키는 방법을 취하였고 법원은 이를 승인하였다. USCG도 이러한 선례에 따라 제소한 것이었다.

3) 이 판결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Global Copyright Protection Vol.6, Winter(2010)」 pp. 11-13 참조할 것.

4) Righthaven v. Klerks, Righthaven v. Realty One Group, Righthaven v. Center for Intercultural Organizing, Righthaven v. Democratic Underground 등이 있다.
http://www.lexisnexis.com/Community/copyright-trademarkaw/blogs/copyrightandtrademarklawblog/archive/2011/03/04/the-righthaven-lawsuits-what-is-fair-use-of-online-publications.aspx

저작권 트롤의 한 유형으로 열거될 수 있다. 1990년대 SCO그룹은 오픈소스 운용시스템인 리눅스(Linux)를 사용한 1,500개 회사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Novell社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SCO그룹의 소를 기각하였던 바 저작권자인 Novell은 저작권침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3. 저작권 행사의 상대방을 기준으로 한 유형

가. 수치심을 가진 침해자에 대한 저작권 행사

미국에서는 최근 Adult Copyright Company, US Copyright Group, and John Steele's Media Copyright Group, XPays 등의 포르노 영화의 저작권자들이 이를 불법 다운로드 받아 본 신원불명의 다수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XPays는 843명을 상대로 Paris Hilton의 섹스데이프를 다운로드 또는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Adult Copyright Company는 Bittorrent 사이트 등을 이용한 17,000명의 파일공유자를 각 제소하였다. 이들은 피고들이 포르노영화를 보았다는 수치심 때문에 쉽게 합의에 응할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제소를 하였다는 점에서 저작권 트롤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⁵⁾

나. 검색서비스회사에 대한 저작권 행사

(1) Field v. Google 사건

블레이크 필드(Blake Field) 변호사는 개인 웹사이트에 게재한 저작물이 구글 데이터베이스에 캐시 링크로 보여질 것을 알면서도 캐싱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

5) http://www.informationweek.com/news/infrastructure/traffic_management/showArticle.jhtml?articleID=227300248

토콜을 활용하지 않아 구글 검색결과에 이 저작물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블레이크 필드(Blake Field)는 구글을 상대로 네바다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⁶⁾

(2) Perfect 10 v. Google 사건

성인잡지를 발간하는 Perfect 10社は 자신의 사이트에 잡지의 내용을 게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구글이 제3자 사이트에서 발견되는 Perfect 10社の 전체이미지의 섬네일 사본을 생성 저장하고 검색결과로 그 섬네일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자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등을 주장하였고 아울러 아마존 등 여러 회사를 상대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였다.⁷⁾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구글과 아마존에 대한 저작권침해가처분 사건을 병합심리하고 구글의 Perfect 10社の 이미지에 관한 섬네일 서비스는 저작권의 직접 침해의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으나 구글이 이미지 전체를 서비스하는 제3자 웹사이트에 링크함에 대한 대위책임 내지 기여책임과 아마존에 대한 저작권침해 주장은 기각하였다.⁸⁾

제9연방항소법원은 2007년 구글의 서비스가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고 아마존 등이 2차적 책임을 질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을 파기, 환송하였다.⁹⁾ 이 사건을 환송받은 지방법원은 2010

년 7월 Perfect 10社가 구글이 저작권침해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고지(notice)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Perfect 10社가 구글 및 아마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일련의 지적재산권침해소송의 행태가 저작권 트롤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동시는 오랫동안 자신의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왔고 구글 및 아마존 등의 링크 서비스로 영업상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 블로거 등에 대한 저작권 행사

신문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재하고 이를 토대로 비평, 논의를 하는 블로거 등을 법원에 저작권침해로 제소하여 미국 저작권법상의 엄격한 법정손해배상책임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유도하는 유형이다. 앞에서 살펴본 Righthaven社의 행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블로거에 한하지 않고 정치적 포럼이나 비영리적인 NGO의 웹사이트에도 같은 문제가 있다.

4. 저작물을 기준으로 한 유형

저작권이 발생하지 오래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적소유(public domain)의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저작권자가 저작물 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 저작권을 주장하는 유형이다. 주로 음악 저작권에서 작곡 샘플링에 대한 저작권침해가 문제되고 있는데 수십 년 전에 발표된 곡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음악 아티스트들이 제소당하고 있다.

2010년초 호주연방법원은 호주의 록 밴드 Men at Work의 히트 곡 Down Under가 1934년 Marion Sinclair가 작곡한 ‘Kookaburra Sits in the Old Gum Tree’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6) Field v. Google, 412 F. Supp. 2d 1106 (D. Nev. 2006)
 7) Perfect 10 v. Amazon, 508 F. 3d 1146(9th Cir. 2007); Perfect 10 v. Visa Intern. Service Ass'n, 494 F. 3d 788(9th Cir. 2007); Perfect 10, Inc. v. Cybernet Ventures, 213 F. Supp. 2d 1146 (CD Cal., 2002).
 8) Perfect 10 v. Google, 416 F. Supp. 2d 828(CD Cal., 2006)
 9) Perfect 10, Inc. v. Amazon.com, Inc., 487 F.3d 701 (9th Cir 2007)

자인 Larrikin Music에게 5%의 저작권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¹⁰⁾ 이는 저작물이 창작된 때로부터 76년만의 일이다.

미국에서는 Drive in Music Company(DIM)사가 펑크밴드 Dyke & the Blazers의 한 멤버가 작곡하여 1969년 크게 히트시킨 'Let a Woman Be a Woman And A Man Be A Man'과 Music Machine의 1966년의 곡 'Come on In'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0년 기아자동차는 영국 인디 록밴드 The heavy가 작곡한 'How You Like Me Now?'를 미국 슈퍼볼(Super Bowl) 광고에 사용하자 'Let a Woman Be a Woman'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아자동차, CBS, 전국풋볼리그(NFL), 광고 대리점인 David & Goliath, Ninja Tune Records 등을 제소하였다.¹¹⁾

또한 DIM사는 2010. 9. New School 및 Busta Rhymes를 상대로 1991년 데뷔 앨범 'Future Without a Past'에 대해 제소한테 이어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 Cyprus Hill이 1991년 발표한 'How I Could Just Kill a Man'에 대하여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Cyprus Hill과 아이튠즈(iTunes) 스토어에서 이 곡을 판매하고 있는 애플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Cypress Hill의 곡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으므로¹²⁾ 장기간 방치한 후에도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을 허용할지는 의문이다.

10) <http://the1709blog.blogspot.com/2010/02/kookaburra-wins-down-under.html>

11) http://www.billboard.biz/bbbiz/industry/legal-and-management/the-legal-fight-over-that-song-from-the-100413988-0_story

12) <http://www.hiphoppulse.com/2010/09/15/cypress-hill-sued-for-sample-in-how-i-could-just-kill-a-man>

III. 저작권 트롤의 법적쟁점과 대처방안

1. 저작권 트롤의 법적쟁점

가. 저작권 트롤의 행태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저작권 트롤은 (i) 개인이나 영세한 비영리 단체 또는 DMCA상 안전항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ii) 저작권 침해의 사전경고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고, (iii) 한 법원에 수천 명의 피고를 동시에 제소하여 소송 비용을 절감하면서 유사한 저작권 침해를 일괄 처리하며, (iv) 미국 저작권법상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협하면서 1,500~3,000 달러를 지급하는 합의를 신속하게 유도하고, (v) 저작권침해사실이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나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요 소송대상으로 삼는다는 특색을 발견할 수 있다.

나. 저작권 트롤의 주요 법적 쟁점

앞서 Righthaven 사건, Perfect 10 사건 등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정이용의 법리(Fair Use Defense), 묵시적 이용허락의 법리(Defense of Implied License), 표현의 자유 보장의 항변, 저작권 트롤의 항변(Copyright Troll Defense),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 다수의 피고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소송(joinder)의 요건 구비여부, 인적재판관할(personal jurisdiction)의 존부, 역외재판관할 및 저작권법의 역외적용 등의 국제사법적 쟁점¹³⁾ 등이 있다.

13) Perfect10사는 구글을 상대로 캐나다에서도 소송을 제기 하였던 바 2010년 7월 18일 캐나다 연방법원은 미국에서 계류중인 소송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미국과 캐나다의 각각 다른 입법상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이는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므로 Perfect 10사는 캐나다에서 미

2. 저작권 트롤에 대한 대처방안

먼저 국내의 저작권 트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저작권 트롤에 대하여 (i) 공정거래법 적용 방안, (ii) 민법상 권리남용법리의 적용방안, (iii) 저작권남용방지처리의 제정방안, (iv) 저작권 트롤에 대한 입법조치 방안, (v) 국제적 공조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 트롤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함에 있어서 이를 특별법으로 할 것인지 저작권법에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저작권행사절차, 저작권 트롤의 형사고소남용에 대한 규제, 공익단체의 소송참가,¹⁴⁾ 피고의 변호사 보수 절

약¹⁵⁾ 등에 관한 사항을 입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실재에 있어서는 적법한 저작권 행사와 저작권

국과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각국 지적재산권 독립의 원칙에 비추어보면 당연한 것이다. 다만 i)미국법원에 캐나다 저작권법상의 권리도 함께 행사할 수 있는가, ii)캐나다에서의 침해자를 공동피고로 삼을 수 있는가, iii)이 경우 준거법은 어느 나라 법인가, iv)미국의 강행법규가 캐나다 저작권침해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등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 14) 미국에서는 앞서본 비와 같이 전자프론티어재단(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공익시민(the Public Citizen), 미국시민자유연맹(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등의 기관이 저작권 트롤들의 저작권행사로부터 시민들을 보조하는 소송 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 15) 전자프론티어재단에 등록된 변호사인 Affinity Law Firm의 Graham Syfert 변호사는 USCG의 공격대상이 된 사람들의 변호사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응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식을 만들어 본인소송(pro se (self help) representation)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 서식에는 Motion to Quash, Motion to Dismiss, Affidavit in Support, Motion for Protective Support가 포함된다. 이 서식의 대금은 10불로 책정되었다. 이 서식은 공란을 메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로써 USCG의 ‘돈을 내든가 소송당하든가의 택일 방식 (pay-up-or-else scheme)’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http://lawwibe.com/uscg-sues-bittorrent-users-graham-syfert-of-affinity-law-firm-defends/#ixzz1GSrC91o8>

트롤의 행태가 비슷할 수 있고 또 한계도 불분명하므로 저작권 트롤의 개념과 요건을 명확히 설정하여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V. 결 론 : 저작권 트롤의 시사점

우리나라도 한·미 FTA에 따라 곧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있는 바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그 기준이 되는 저작물의 개수의 확정도 어려운 문제일 뿐 아니라 미국처럼 저작권 트롤에 의한 악용도 우려되는 만큼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같은 맥락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하여 미국처럼 사소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현행법 하에서도 기소유예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유지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하여 저작물 이용에 불편이 따르고 저작권 트롤에 의한 악용의 소지도 있는 만큼 저작권등록강제제도, 저작권소멸제도의 설정 등 저작권 보호제도 및 보호기간의 신축화와 권리 불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제한 등의 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중국 내 한국 방송콘텐츠 저작권 침해 원인과 대응방안

윤호진 |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팀장

I. 서론

중국의 문화콘텐츠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까지 750억 달러(약 82조 5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향후 5년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¹⁾ 중국 시장의 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한국의 문화콘텐츠들도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고, 관련 업계들의 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중국의 문화콘텐츠시장, 특히 방송시장에서 한류 콘텐츠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활발하게 유통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방송콘텐츠, 특히 TV 드라마를 중심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고 저작권 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방송콘텐츠 저작권 침해의 주요 원인 2)

중국에서 한국의 방송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빈발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 측면의 원인이다. 이는 주로 중국의 법적 보호조치가 불완전하고 단속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유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저작권 관리체계가 기본적으로는 갖춰졌지만 아직 상응한 보호조치가 미흡하고 침해자의 불법수입을 확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또한 각 부서 간에 저작권 침해행위 단속에 필요한 협조가 부족하고, 상시적이 아닌 비정기적인 특별단속만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시장 측면의 원인을 들 수 있다. 한류 드라마의 경우, 유행 속도가 빠르고, 불법복제물 생산원가가 매우 낮으며 제작주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불법복제의 수익성이 크다. 한편으로 불법복제물 지하 유통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어서 판매에 더욱 편리한 동시에 외국으로부터 수입도 훨씬 빠르다. 셋째, 소비자 측면의 원인도 들 수 있다. 아직 중국

1) 한국콘텐츠진흥원(2011), 「2010 해외콘텐츠시장조사(총괄)」 참조

2) 이하 주요 논의는 윤호진 외(2008), 「방송콘텐츠 온라인 불법유통 현황 및 저작권 침해유형 분석」에서 인용함

소비자들의 문화소비수준이 낮기 때문에 조잡하지만 가격이 낮은 불법복제물을 구입하게 되고 이것이 일정한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현재 중국에서 한국 TV 드라마에 대한 저작권 침해 정도가 가장 심각한 방식은 음악영상점이나 전문점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판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소비자들이 이런 불법복제물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정품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 때문이다. 불법복제 CD의 판매가격은 원래 정품보다 매우 낮은 상태였으며, 2004년 HDVD가 등장한 후 이 같은 현상은 한층 더 심화되었다. 용량이 크고 품질 또한 이전의 각종 압축 CD보다 좋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규 음악영상점에서 <가을동화> 정품 DVD 1세트의 판매가격은 200위안 이상이지만, 시장에서 불법복제 HDVD 1세트의 평균 가격은 단돈 15위안에 불과하다. 조사에 응한 한 판매원에 따르면 정품 드라마 DVD의 소비자는 주로 수입이 안정적이고 비교적 지위가 높은 샐러리맨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불법복제물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학생부터 상인까지 매우 광범위하다고 한다.

또한 드라마 다운로드도 샐러리맨들의 환영을 받는다. TV에서 방영하는 드라마 횟수는 한계가 있어서 하루에 보통 2부에서 3부를 방송하고 방영시간 또한 대부분 저녁 10시 이후이다. 예를 들어, CCTV의 드라마채널은 저녁 10시 반 이후에 외국드라마를 방영하는데 그중에서 한국 드라마가 많고 시청률도 높다. 하지만 방송정책규정 때문에 TV 황금시간대에는 국산 드라마를 방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생활리듬이 빠른

샐러리맨들은 매일 밤 TV를 통해서 한국드라마를 보는 전통적이고 느린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방식을 선호하게 된다. 더구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원하는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해서 시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드라마는 내용이 비교적 방대하기 때문에, 압축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많은 부수의 드라마를 3~4장의 디스크에 담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전에 불법복제에 쓰이던 압축판 CD는 모두 VCD였는데, 이는 용량이 충분하지 않고 비록 1장의 VCD 압축판은 정품 VCD보다 대용량이지만 품질을 보증하기 어려웠다. 어떤 불법복제 VCD 압축판은 자주 화면이 나오지 않거나 흐릿하고 모자이크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현재 쓰이고 있는 압축판은 DVD로 용량이 크고 화면이 뚜렷하며, 심지어 어떤 불법복제물은 용량과 품질이 매우 뛰어난 DVD-9로 정품을 복제하는데 판매가격은 정품보다도 저렴하다. 일반적으로는 드라마 12부를 디스크 한 장에 압축해 넣을 수 있으며 가격은 1장에 6~10위안 정도이다. 따라서 정품으로 전편을 구입하려면 100 위안 정도가 드는 드라마가 불법복제물로는 단돈 20위안에 구매할 수가 있게 되며 그 품질 또한 뛰어나다.

III. 방송콘텐츠 저작권 침해 구제방안

지금까지 살펴 본 중국 내에서의 한국 TV 드라마의 저작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 중국 법규에 의거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저작권 구제조치의 특징은 사법절차와 행정절차가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의 양태에 따라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구제방안을 상정해 볼 필요가 있다.

구제조치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민사소송과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형사절차가 개시되면 다른 절차의 진행이 중지된다는 점이다. 이는 소위 ‘형사우선? 민사보류의 원칙’으로 중국에 특유한 제도이다. 다만 권리자의 손해배상과 재산형 처벌의 경우에는 민사가 우선하게 된다.

노점상이나 도매시장에 판매하는 불법복제물은 대부분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복제하거나 해외에서 밀수입된 것들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정품과 불법복제물을 섞어서 판매하기도 한다. 이런 판매자들의 경우 대부분 판매한 증거만 있고 판매자의 신분을 완전히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할 위험이 높으며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의 가능성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행정신고를 통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만일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크고, 침해자의 이익이나 판매수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판매처에 대해 일정한 검사도 진행하기 때문에 불법복제 유통정도가 노점상 등과 비교할 때 심하지는 않은 편이다. 다만 일부 정상제품과 불법복제물이 함께 판매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판매 CD의 수록곡 10곡 중 일부에 불법복제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백화점, 마트, 전문점 등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준의 규모를 갖춘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민사소송을 통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만일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개개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면, 행정신고를 통해서 관련 제품의 판매를 정지하고 그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인터넷, PC방, 교내망 등은 정보량이 많으며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온라인상에서의 침해행위는 CD 등에 비해 은폐성과 신속성이 높기 때문에 권리자 구제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이트의 소유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쉽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나, 불법서버를 설치한 경우 등에는 이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으로 나가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일단은 행정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며, 특히 인터넷 이용자들이 젊은 층이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의 침해에 대하여 행정신고가 좋은 책임추궁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행정신고를 통해서 관련 침해자와 침해행위 등에 관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편리하다.

구미 선진국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구제조치를 강구하기보다 집단적인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불법복제물의 제작보다 유통단계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다 확고한 권리의식을 갖추고, 중국의 관련 법제를 이해 하며, 중국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여러 가지 변화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영향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기업 단위의 노력과는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나 저작권위원회 등이 중국 해당 부서 및 기관들과 더 많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사법교류와 공조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상대방의 공조요청에 신속하게 부응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구축된 한중 저작권상호등록과 저작권확인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한중 온라인비즈니스센터를 수립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본 저작권 보호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

심재훈 | 미국 변호사

(Washington D.C. and Maryland bar member)

1. 서론

최근 인터넷·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저작물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이용이 대부분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저작물의 창작은 물론 유통과 소비까지의 연쇄적인 생산-공급-소비망이 형성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은 이제 창작산업(Creative Industries)과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이러한 창작산업의 인터넷 공간에 대한 의존도(dependency)는 앞으로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세기에 전성기를 누렸던 대부분의 제조업체(Manufacturing Industries)들이 정상적인 유통망들을 위조품(Counterfeit Products) 또는 밀수품(Contraband Products)들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연쇄적인 생산-공급-소비망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보호에 주력했듯이, 21세기에 전성기를 맞고 있는 창작산업 각 분야 역시 저작권 침해로 대표되는 “위조” 저작물들과 “밀수” 저작물들, 다시 말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들의 불법유통과 소비로부터 연쇄적인 생산-공급-소비망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온라인 저작권 보호는 입법·사법·행정부로 대표되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support)과 실행(enforcement)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에서도 문화부와 국회 문방위의 주도로 저작권법 133-2조에 반영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누진적 대응제도¹⁾가 전세계 최초로 2009년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입법화되었고 200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²⁾에게 기술적인 보호조치인 필터링(filtering) 조치를 의무화 한 저작권법 104조는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benchmarking)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창작산업을 매우 중요한 경제섹터(economic sector)군으로 인식하고 지원해 온 미국에서도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최근 온라인 저작권

1) 누진적 대응제도(graduated responses)는 우리나라는 물론 프랑스, 뉴질랜드, 대만 등에서도 입법화되어 온라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2) 특별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Online Service Providers)은 주로 웹하드 사이트들과 P2P 사이트들을 말한다.

강화 움직임이 연방 상원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여기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³⁾

II. 본 론

(1) 창작산업 경제에 대한 온라인 위협과 지적재산 절도 방지 법안

2011년 5월 21일 버몬트(Vermont)주의 연방 상원의원인 패트릭 레이히(Patrick Leahy)를 대표 발의자로 한 17명의 연방 상원의원들은 일명 “불법·불량 사이트 제제 법안(The Rogue Site Bill)” 또는 “지적재산권 보호법안(The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Act)”이라고 불리는 “창작산업 경제에 대한 온라인 위협과 지적재산 절도 방지 법안(The Preventing Real Online Threats to Economic Creativity and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을 연방 상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절도한 콘텐츠를 불법으로 인터넷 상에 유통시킴으로써 부당 이익을 챙기는 웹사이트들을 제제하고 방지하고 뿌리 뽑는데 그 목적을 둔다.

가. 법안 상정 배경

미국 연방 상원의 대다수 유력 상원의원들이 동참한 이러한 법안이 나온 배경을 살펴 보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지적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⁴⁾인 빅토리아 에스피넬(Victoria Espinel)이 최근에 미국 연방 의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미국의 국가적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이러한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들은 콘텐츠 창작산업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일자리⁵⁾들을 위협하면서 경제 전반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으며 문화 콘텐츠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고 있다”고 보고했다.

디지털 콘텐츠 저작물에 대한 방대한 도둑질이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이트들은 국경을 초월해 인터넷이란 공간을 활용하여 영화와 TV 드라마 등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들에 대한 도둑질을 대량으로 가능하게 해 주거나 유인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더 큰 문제점은 이러한 불법·불량 사이트(rouge sites)들이 최근 들어 합법 사이트임을 가장하며 소비자들에게 큰 혼동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법·불량 사이트들이 근래에 비자 카드(Visa card)나 마스터 카드(Master card)와 같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경제 활동에 사용되는 결제수단은 물론, 페이팔(PayPal), 머니브로커(Moneybrokers), 얼럿페이(AlertPay), 그리고 게이트투샵(Gate2Shop)과 같은 정상적인 전자적 결제수단들을 이용하면서 합법 사

3) 연방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장 최근의 온라인 저작권 강화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1) 창작산업 경제에 대한 온라인 위협과 지적재산 절도 방지 법안(The Preventing Real Online Threats to Economic Creativity and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 (2)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는 중경제사범 처벌법(The Commercial Felony and Stream Act)

4)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문화 콘텐츠 창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09년 9월 25일 빅토리아 에스피넬(Victoria Angelica Espinel) 변호사를 “지적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으로 임명했다. 에스피넬 변호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 집행과 관련된 전략과 정책들을 발전시키고 관할하고 있다. 한류를 중심으로 문화 콘텐츠 강국을 추구하는 우리나라도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 내에서 이러한 조정관 기능이 꼭 필요하리라고 본다.

5) Decent and high-wage jobs

이트임을 가장하고 있고 또한 굴지의 저명한 회사들의 광고를 사이트에 올려 놓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합법 사이트로 오인하게 하며 큰 혼동을 주고 있다. 이러한 모든 기만적인 행위들이 합법적인 순진한 소비자들을 부지불식간에 그들의 저작권 침해 불법행위의 공범자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

나. 법안 분석

“창작산업 경제에 대한 온라인 위협과 지적재산 절도 방지법안(The Preventing Real Online Threats to Economic Creativity and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 법안은 미국 연방정부 검찰총장⁶⁾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⁷⁾ 또한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 저작권 침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해외의 웹사이트에 대해서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특정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형법(criminal law)은 가능한 한 세부적이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narrowly apply)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의 주장처럼 이 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명 불법·불량 사이트들(rogue sites)을 오직 미국 연방 저작권법 1201조와 501조를 위반한 웹사이트로 한정하고 있다.⁸⁾

셋째, 이 법안은 불법·불량 사이트들의 불법 비즈

니스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서 미국 경제관련 정부부처, ISP, 인터넷결제서비스 회사들, 그리고 검색서비스 회사들은 물론 광고 서비스 관계자들의 협력과 법원의 명령을 통한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⁹⁾

넷째, 이 법안은 자발적으로 저작권 침해방지에 노력한 업체에 대한 면책조항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회사들¹⁰⁾과 광고 또는 스폰서 회사들 그리고 그 회사들의 직원들과 임원들에 대해, 한 특정 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상황 속에서 저작권 침해방지에 노력했을 경우 책임을 묻지 않고 면책을 주는 조항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미국 연방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관련 법 집행 기관들과 협의하여 “창작산업 경제에 대한 온라인 위협과 지적재산 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이 법의 집행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법 집행의 효과에 대한 연구 분석

이 법안은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로 하여금 이 법안이 발효된 후 1년 이내에 미국 연방 상원과 하원의 법사위원회(the Senate and House Judiciary Committee)에 이 법안 제 3조에 기술된 각 기관의 효과적인 집행 능력에 대한 단계별 효과들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6) 미국 연방정부의 U.S. Attorney General은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에 해당한다.

7) Empowering the U.S. Attorney General to act expeditiously

8) This bill affects only the violators of 17 USC § 1201 and § 501

9) Including a relevant U.S. registrar, registry, Internet service provider, payment processor, search engine, and advertisement placement service companies.

10) Payment processors들을 말하여 주로 Master card나 Visa card 같은 신용카드 회사들과 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중계하는 관련 결제회사들을 말한다.

한 연방 저작권 오피스는 관련 정부기관들은 물론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이 법안의 효과의 정도에 대한 연구는 물론 새롭게 나타나는 각종 기술들과 이 법안의 집행을 점검하거나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보고서를 이 법안이 발효된 후 2년 안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는 중경제사범 처벌법

위의 법안과 같은 시기에 미국 연방 상원에 접수된 또 다른 법안은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서 저작권을 침해하여 부당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중범죄로 처벌하는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한 중경제사범 처벌 법안(The Commercial Felony and Stream Act)”이다.

가. 법안 상정 배경

최근 제112회 미국 의회 회기 때 미국 민주당 소속 미네소타주 연방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버처(Amy Klobuchar)와 미국 공화당 소속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존 코닌(John Cornyn)이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은 5월 12일에 연방 상원에 접수되었다.

그 법안 발의 배경을 보면, 현행 미국 저작권법은 의도적인 저작권 침해를 중범죄(felony) 로 기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잇단 기술의 발전으로 굳이 파일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하지 않더라도 스트리밍만으로도 불법 파일들을 유통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되어, 현행 미국의 저작권법 하에서는 “저작권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유통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인데, “스트리밍”이라는 행위가 불법 “유통”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과연 중범죄로 기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왔다. 이에 의도적이고 사적인 재정적 이익이나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스트리밍”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도 중범죄(felony)¹¹⁾로 기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법제화 할 필요가 제기되어 오고 있었다.

나. 법안 분석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중범죄로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는, 미국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유통시키는 범죄 즉 디지털 콘텐츠 절도 행위를 통해 확보한 저작물(불법파일들)을 유통시키는 방법은 P2P 사이트를 통해서 유통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서 유통하는 방법이 있다. 똑같은 디지털 콘텐츠 절도 행위를 통해 확보한 저작물(불법파일들)을 유통시키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연방법은 P2P 사이트에서 불법파일을 공유하는 것만을 중범죄로 분류하고 있어, 이 법안은 불법적으로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서 저작권 침해하는 것 역시 중범죄임을 명시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다. 기대되는 법안의 효과와 순기능

불법 스트리밍을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게 하는 이 법안은 해당 법을 위반한 범죄자에게 징역형도 가능케 함으로서 그 자체로서 불법 침해를 자제(deterrent)하게 하는 사회적인 교육 효과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온라인 저작권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 미국의 형법은 범죄들을 중범죄(felony)와 경범죄(misdemeanor)로 나누어 그 처벌의 수위를 정한다.

III. 결 론

가. 미국 연방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위 두 법안이 주는 시사점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조치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다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경제와 창작산업(Creative Industries)을 주도하는 업계가 적극적으로 온라인 저작권 보호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러한 필요성을 미국의 입법기관에서 잘 반영하여 입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최근 미국 연방 상원에서 발의된 위의 두 가지 법안에 대해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를 비롯한 거의 모든 창작산업군¹²⁾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온라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이러한 행보가 철저하게 민관합동으로 강력한 협력의 의지를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예로 위 법안들이 상원에 접수되자마자 미국 42개 주의 검찰총장들(Attorney Generals)¹³⁾이 미국 상원과 하원에 해당 법안들의 통과를 요청하며 지적재산권 강화, 특히 온라인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

한 입법화에 감사와 지지를 보낸다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나. 2011년 7월 현재 대한민국 온라인 저작권 보호의 현주소

지난달 대한민국의 한류가 프랑스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한동안 지속되었다. 창작산업(Creative Industry)은 단순한 돈벌이 산업이 아니다. 창작산업은 그 나라의 문화의 척도이자 세계 문화 주도의 한 축을 이루는 국위·국격이 거론되는 산업이다.

창작산업의 건전한 생산·유통·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모두 잠먹는 저작권 침해행위와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유도·유인·조장하는 불법·불량 사이트들에 대한 대응을 위해 민관의 강력한 유대·협조가 절실하다. 이는 문화 콘텐츠 소비지들에 대한 생산자와 합법 유통자 그리고 정부 삼자간의 긴밀한 협조로 풀어야 하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기도 하다. 또한 국경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드는 인터넷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제적인 공조 역시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하다.

우리가 미국의 저작권 강화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듯이,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133-2조에 반영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누진적 대응제도와 104조의 필터링(filtering) 조치 의무화에 이어 올 11월에 시작될 웹하드/P2P 등록제를 주목하고 벤치마킹(benchmarking)하려 하고 있다. 온라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정부의 의지표명과 민관의 지지와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12) U.S. Chamber of Commerce,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MPAA), Independent Film and Television Association (IFTA), Directors Guild of America(DGA), International Alliance of Theatrical Stage Employees(IATSE), Screen Actors Guild(SAG), American Federation of Television and Radio Artists(AFTRA), 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UFC), National Association of Theater Owners(NATO),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RIAA)

13) 주(State) 소속 검찰총장들로서 주(State)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이다.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미국의 ‘저작권 경고 시스템’ - 또 하나의 삼진아웃제?

김경숙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교수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1.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s System)의 등장

지난 7월 7일 미국에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이하 ‘ISP’)와 저작권단체들 사이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기술적 조치인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s System)’의 실시를 위한 합의가 발표되었다. 이 시스템은 미국의 다섯 개 ISP 업체들(AT&T, Verizon, Cablevision Systems, Comcast, Time Warner Cable)과 미국레코드협회(RIAA), 미국영화협회(MPAA) 등의 저작권단체가 저작권 침해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에 합의한 것이다.

이번 저작권 경고 시스템의 합의는 비트토렌트 같은 P2P 파일공유 기술을 이용하는 ISP가입자(subscriber)들¹⁾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문제에 있어서, ISP는 저작권자로부터 불법이용의 통지를 받을 경우에 침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가입자에게 이메일로 이를 전달하기만 할 뿐이었고, 가입자에게 이에 대한 검증의 기회부여와 합법 저작물의 접근을 유도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다.

저작권 경고 시스템은 ISP가 어느 가입자의 인터넷 계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그 가입자에게 침해에 관한 사실을 경고하는 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6단계에 걸쳐 통지한다. 저작권 경고 시스템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이용되고 있음이 적발된 ISP의 가입자에게 초기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만, 5, 6단계에 이르러서는 인터넷 속도를 떨어뜨리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웹 브라우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침해자로 여겨지는 가입자에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가 사실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저작권의 중요성과 합법 저작물의 이용방법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저작권정보센터(Center for Copyright Information)²⁾도 운영될 예정이다.

1) 대개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들을 ‘이용자(user)’라고 한다. 이용자는 인터넷에 가입하여 인터넷 계정을 보유한 자인 ‘가입자(subscriber)’와 일치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 www.copyrightinformation.org/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미국에서 곧 실시하게 될 저작권 경고 시스템의 도입배경과 시사점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2. 인터넷상에서의 서비스제공자의 역할

인터넷상에서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³⁾는 이용자들의 정보(콘텐츠)를 전달하거나 호스팅(hosting)하고, 인덱스(index)화하는 등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로 매개역할을 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 및 검색엔진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ISP는 통신을 하기 위해서 서버까지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하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AT&T(미국), KT(한국)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OSP란 이용자가 정보를 다른 자에게 대량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실제로 축적하는 것과 같은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며, YouTube나 MySpace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검색엔진은 월드와이드웹(WWW)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검색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구글과 같은 서비스제공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문제는 권리자

3)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그동안 서비스제공자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용어를 통일하여 규정해왔으나, 한·EU FTA와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한 개정저작권법(법률 제10807호, 2011. 6.30. 일부개정) 제102조1항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DMCA 제512조와 마찬가지로, ① 인터넷 접속서비스 단순도관(제1호), ② 캐싱(제2호), ③ 저장서비스(제3호), ④ 정보검색도구 서비스(제4호)로 구분하여 규정하게 되었다. 여기서 ① 인터넷 접속서비스 단순도관은 ISP에, ③ 저장서비스는 OSP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와 침해자 사이의 문제인 오프라인과 달리 권리자와 침해자 및 불법저작물이 거처가는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서비스제공자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서비스제공자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교환, 검색, 송신 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침해책임에 대신하여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어왔다. 그런데 방대한 양의 정보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서비스제공자가 매번 불법저작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면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미국 등 각국의 저작권법제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그에 상응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DMCA⁴⁾ 제512조, 한국 저작권법 제102조 및 제103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한 행위들은 바로 기술적 조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즉, 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한 기술적 조치로서 불법콘텐츠를 삭제(takedown)하거나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면책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의하여 자칫 이용자 측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보의 전송이 차단되거나 계정이 정지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여지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P2P

4)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1998(미국연방저작권법으로 편입).

의 경우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저작물에 다른 P2P 이용자들도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한 부모가 가입한 계정을 그 가족인 미성년의 자녀가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로 인해 ISP가 계정을 정지시킬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반복적 침해단계에서 정지시킬 것인지 그 기준이 분명할 필요도 있다.

3. DMCA상 서비스제공자의 계정정지와 책임제한

DMCA 제512조(i)(A)에서는 계정 보유자가 반복적인 침해자인 경우에 그 계정을 정지시키는 기술적 조치를 할 것을 전제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제한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제공자의 유형에 따라 면책의 요건에 차이가 있다. 즉, 저장서비스를 제공하는 OSP의 경우는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의 계정을 정지시킴으로써 책임이 제한되기도 하지만, 제512조(c)에 따라 OSP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가 일어났다는 통지(‘삭제통지’)를 받은 후에 신속하게 불법저작물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제한된다. 이때 OSP는 이용자(업로더)에게 ‘대응통지’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⁵⁾ 즉, OSP가 콘텐츠를 업로드한 이용자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통지한 경우에 당해 이용자는 실제로는 저작물 이용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 미국의 저작권법은 제512조(c)(3)(A)에서 권리자 측의 ‘권리침해 주장의 통지(notification of claimed infringement)’(‘삭제통지’)의 요건을, 제512조(g)(3)에서 이용자 측의 ‘재개요구의 대응통지(counter-notification)’(‘대응통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고 (저작권자가 침해라고) 착오 또는 오인한 결과, 제거 또는 차단이 되었다는 것 또는 그 이용이 공정이용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⁶⁾ 이와 같이 OSP의 면책과 관련하여서는 삭제통지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대응통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는 자신의 이용행위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검증하고 저작권 침해주장에 대하여 이의하거나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⁷⁾

그러나 ISP의 경우는 OSP와 같은 ‘저장서비스’가 아니므로 삭제통지 및 삭제(notice and takedown)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 결국 ‘반복적인 침해자’인 경우에는 그 침해자의 인터넷 계정을 정지시킴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계정이 정지되기 전 경고단계에서 가입자들이 자신의 계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저작물이용과 관련하여 불법 이용인지의 검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ISP에 의하여 계정을 정지당한 가입자는 결국 사후적으로 소송 등에서 저작권자의 권리침해 주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변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입자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다.

4. 저작권 경고 시스템의 특징

이와 같은 점을 생각한다면 ISP에 있어서는 단순

6) 미국의 저작권법 제512조(g)(3)(C)(2000)을 참조할 것.
7) 제512조(f)는 통지를 송부한 측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허위의 통지를 고의로 한 경우에 삭제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OSP 또는 저작권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 측이 삭제통지를 하고자 할 때는 그 이용이 저작권 침해인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모두 고려한 후에 신중히 하여야 한다.

히 저작권 보호만을 위하여 계정을 정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입자에게 저작권 침해여부를 검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저작권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가입자 내지 이용자들에게는 사후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합법적인 저작물의 이용 방법 등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술적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술적 조치의 실시는 대개 인터넷상에서 서비스제공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모두에서 언급한 저작권 경고 시스템이 바로 이와 같은 ISP의 협력의 예이다.

저작권 경고 시스템은 위에서 언급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기술적 조치”라 부를 만한데, 그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 경고 시스템은 저작권 침해의 경고를 6번에 걸쳐 하게 되지만 최종적으로 인터넷 계정을 정지시키지는 않고 다만 인터넷의 속도를 저하시킨다는 점이다. 이것은 프랑스나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제의 소위 삼진아웃제⁸⁾가 세 번의 경고 후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과 다른 점이다. 또한 미국 저작권법(DMCA) 제512조(i)는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는 요건인 ‘반복적인 침해’에 대한 기준이 없다.⁹⁾ 이번

8) 현재 삼진아웃제는 우리나라 외에도 프랑스, 뉴질랜드, 대만 등에서 입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하도피법으로 유명하다.

9)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상원 및 하원 보고서에서도 “제512조(i)가 침해의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 스스로의 서비스를 감시하는 것, 또는 문제가 된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서비스제공자에게 곤란한 판단을 의무지울 의도는 없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반복하여 인터넷 액세스를 남용하여 다른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는 액세스를 상실한다는 위협이 현실임을 알아야 한다. (H.R.Rep.No.105-551,

에 합의된 저작권 경고 시스템에서는 6번의 경고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반복적인 침해의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둘째, 가입자들을 교육사이트로 유도하여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교육내용에는 합법적 저작물이용과 불법적 저작물 이용의 구별, 저작권의 중요성(창작자들과 미국경제 그리고 이용자(소비자) 자신들에게 저작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등이 포함되며, 교육 등을 담당할 전담 기관으로 연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셋째, 가입자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검증을 요구할 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부 가입자들은 종종 자신의 계정이 저작권 침해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불법으로 다운로드 및 업로드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입자 내지 이용자들에게 자신의 계정이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저작권정보센터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증할 전문가들을 별도로 고용할 예정이다.

요컨대 P2P 프로그램상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DMCA상으로는 ISP에게 침해에 관련된 가입자의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있었으나, 가입자가 이의 내지 항변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으며, 또한 반복적 침해의 구체적인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 이번에 합의된 저작권 경고 시스템은 6번의 경고 동안에 자신의

pt.2, at61(1998); S.Rep.No.105-190, at51-52(1998))”고 하고 있을 뿐이고 계정을 정지시킬 만큼의 ‘반복적인 침해’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계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검증하고 이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어찌보면 법(DMCA)의 불비를 업계 자율에 의해 보완하고 있는 셈이다.

5. 삼진아웃제와 저작권 경고 시스템 - 우리 법에의 시사점

저작권 경고 시스템은 “인터넷 삼진아웃제”에 비견될 만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몇몇 국가(프랑스, 뉴질랜드, 대만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삼진아웃제”와는 두 가지 점에서 크게 다르다. 첫 번째, 삼진아웃제가 법률로 규정된 법적 규제임과 달리 저작권 경고 시스템은 ISP와 저작권단체들 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인터넷 삼진아웃제는 한마디로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시킴에 반해, 저작권 경고 시스템은 계정을 정지시키지는 않고 다만 인터넷 접속속도를 저하시킬 뿐이라는 점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삼진아웃제에 국한하여 비교해 본다면, 저작권경고시스템에 비해 삼진아웃제의 절차적 요건은 대단히 복잡하다. 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OSP에게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경고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133조의2 제1항), 이 명령에 따라 OSP는 당해 침해자에게 경고를 발송한다. 매번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OSP가 경고를 발송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었는데도 다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침해자의 계정을 정지하도록 OSP에게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을 받은 OSP가 해당 계정을 정지하게 된다(동 제2항).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계정 정지 명령을 발하기 전에 당해 침해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동 제7항).

이와 같이 우리 법상 인터넷 삼진아웃제는 정부기관이 OSP에게 경고발송 명령 및 계정정지의 명령을 발함으로써 비로소 OSP가 경고를 발송하고 최종적으로 계정을 정지할 수 있게 되는 구조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저작권 침해 및 그 대응이라는 사적인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여 그 해결을 주도하는 제도인 셈이다. 또한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문제가 기술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기술적 조치에 근거한 해결이어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절차적 요건은 기술적 조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반면에 미국의 저작권 경고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ISP와 저작권단체들의 자율적인 합의에 기초한 기술적 조치라는 점에 우리 법과의 커다란 차이가 있다. 향후 인터넷 삼진아웃제의 제도운용과 관련하여 음미해볼 대목이다.

Global Copyright Protection



한·EU FTA 발효가 저작권 보호에 미치는 득과 실

조미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I. 들어가며

지난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되었는데, 조만간 비준 움직임이 본격화될 한·미 FTA와 함께 미국, EU와의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FTA를 통한 교역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EU와의 FTA가 모두 발효될 경우 한국의 총 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교역량이 많은 국가와의 FTA가 발효됨에 따른 FTA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논의가 주로 상품교역 관련 이슈에 집중되고 있으나, FTA 협상을 통한 선진 제도 도입과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의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의 경우 미국, EU와의 FTA 협상을 거치면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협상결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FTA와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는 각국의 국내산업 및 문화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 보호형태와 정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FTA를 통한 무역체제의 개방과 함께 국제적인 경제활동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상이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로 인한 지식재산권 관련 통상문제가 빈번해지면서 지식재산권의 조화(harmonization)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조화의 움직임은 기존의 WIPO 혹은 WTO/TRIPs를 통한 국제적 보호의 움직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의 주도 하에 등장하였다. 초기에는 선진국이 시장접근에 대한 대가로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식재산권 협상이 이루어져왔으나, 점차 FTA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그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복잡해지게 되었다. 이는 FTA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 간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달라 “협정”마다 협상에 임하는 전

략과 의도가 상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칠레, 싱가포르, EFTA 등을 상대로 소극적인 전략을 취해왔는데 TRIPs 협정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을 선언하는 수준에 그쳐왔다. 이후 한·미 FTA 협상이 개시되면서 처음으로 저작권, 상표, 특허, 집행 등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 걸쳐 논의가 진행되었고, 미국 수준의 보호수준과 제도 수용을 요구하는 미측 공세에 우리측의 수세적인 입장이 부각되면서 동 분야에 대한 협상결과에 모든 관심이 주목되기도 하였다.

한편 한·미 FTA를 타결한 직후에 협상이 개시된 한·EU FTA의 경우 미국과 EU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나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아 보다 수월한 협상이 전개되었지만 EU의 경우 미국이 보호하지 않는 지식재산을 보호하거나 미국과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어 한·미, 한·EU FTA의 협상결과에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EU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및 한·EU FTA의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타결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히 저작권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III. EU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및 한·EU FTA의 주요 합의내용

1. EU의 지식재산권 보호

EU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운영하는 주체는 각 회원국 정부, 집행위 그리고 유럽특허청과 같은 지식재산

권 제도를 위해 특별히 설치된 제3의 기관 등 3개로 구분된다. 집행위는 유럽공동체상표, 유럽공동체디자인, 저작권, 저작인접권, 지재권 보호 등에 관련된 정책수립과 규정의 설치 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집행위 차원에서 마련된 정책 및 규정은 EU 전역에 효력을 미치지만 이외에도 각 회원국은 여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련된 법, 규정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한편 유럽특허청은 EU 회원국 및 집행위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EU는 오랜 역사적 전통에 따른 풍부한 문화적, 학문적 자산이 축적되면서 만들어진 다양한 강력한 경제, 산업적 기반 그와 관련된 많은 지식재산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풍부한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통해 유럽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애쓰는 한편 지식재산의 지속적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만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그 차이에 따라 단일 시장으로서의 유럽지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무엇보다 지식재산권 제도의 통일화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도 EU 역내시장에서의 제도의 통일화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데, 집행위 차원에서 1988년 저작권과 기술도전에 관한 녹서를 발표하고, 1990년 12월에는 그 녹서를 구체화하는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위성방송과 케이블전송 및 대여권의 보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의 통일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각 지침별 세부적인 보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Council Directive 2001/29/EC)
 - 기존의 저작권 관련 지침들의 복제권, 송신권 및 배포권과 관련된 사항을 디지털시대에 맞게 보완 또는 개정
 - 송신권의 경우 저작자에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모든 저작물의 송신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공중전달권을 부여한 반면 저작권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에게는 이용제공권만 부여
 - 복제권, 송신권 및 배포권에 대한 구체적인 예외조항 규정
 - 복제권 중 네트워크상의 제3자간 전송 또는 합법적인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과정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복제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한편 사적이고 비상업적인 목적의 복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복제를 허용하고 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결정하도록 규정
- (ii)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보호기간(Council Directive 93/98/EEC)
 - 문학작품 또는 예술적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의 사후 70년간 보호, 영화 및 시청각 작품 역시 감독 등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간 보호
 - 음반제작권의 보호기간은 음반에 고정된 때로부터 50년간 보호, 단 음반이 합법적으로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경우 합법적 공개 또는 전달 시점으로부터 50년 보호
- (iii) 저작권자에 대한 재판매권 보호(Directive 2001/84/EC)
 - 미술 저작품이 작가의 명성을 얻게 된 후 고가에 판매될 경우 판매금의 일정비율을 저작자(직계상속인 포함)에게 배분하도록 규정
 - 단 재판매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판매가격이 3,000 유로 이상이어야 함.
- (iv) 데이터베이스 보호(Directive 96/9/EC)
 - 자료가 체계적, 조직적 방법에 의해 배열된 데이터저작물 또는 기타 자료의 집합체로서 전자적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 단 비전자적 데이터베이스의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 교육 및 연구 개발을 위한 발치는 허용

출처 : 「EU정책 브리핑」, 외교통상부(2007)을 토대로 저자 작성

2. 한·EU FTA에서의 저작권 협상

EU는 유럽 이외 지역에 있어서도 유럽의 지식재산권이 보다 강력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럽 경

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EU의 전략은 한·EU FTA 협상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으며, 추급권, 공연보상청구권, 방송사업자 권리 등 EU측의 핵심제기 사항을 통해서도 파악될 수 있다.¹⁾

먼저 추급권은 EU의 저작권자에 대한 재판매권 지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술가가 예술품을 처음 판매한 이후의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가질 권리를 말한다. 추급권의 대상은 독창성 있는 예술저작물로 회화, 조형예술 및 사진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17개 회원국이 추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EU FTA에서는 협정 발효 2년 내에 추급권 도입의 적절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추급권에 의해 지급해주어야 할 금액이 일종의 세금으로 작용하여 저작물의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 가격 상승 원인이 저작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손해를 입는 경우 구입자에게 보상해줄 수 없어 일반적이라는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공연보상청구권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음반이 이용되는 경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그 이용에 대해 일정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는데, EU가 인정요구를 철회함에 따라 일 단락되었다.

1) 주요 쟁점별 협상 내용은 「한·EU FTA의 지적재산권 주요 쟁점 분석」(이대회)을 참고하여 작성함.

한편 방송사업자 권리와 관련하여 EU 측에서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방송물을 재방송하거나 공중전달하는 것에 대해 방송사업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와 관련하여 특히 입장료를 지급함으로써 공중이 입장할 수 있는 장소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에는 별도로 입장료를 내고 방송물을 시청하는 사업장이 없는데, 다만 스포츠 바(bar)의 경우 TV를 틀어주는 경우 직접적으로 입장료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값 안에 입장료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한·EU FTA 협상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 보았는데, 한·미 FTA의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인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강화 등 여러 쟁점에 양국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것과 달리 한·EU FTA의 경우 상대적으로 크게 대립될 쟁점이 적었다. 또한 EU 측의 여러 요구사항 중 일부는 철회되었거나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되면서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지식재산권 제도의 지속적인 선진화를 위해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가 요구되는 바이다.

IV. 맺음말

지식재산권 제도의 근간은 정보생산과 이용자간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정보 및 지식의 확산과 그 사회적 이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편익 또는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적절

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지식의 활용과 확산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소비자 후생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FTA 협상 결과가 소비자 후생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 한·EU FTA보다는 한·미 FTA의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두 개 FTA의 영향이 모두 종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지식재산권 가치를 높이고, 이는 혁신과 창작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 기업의 R&D에 대한 투자 확대와 창작활동의 활성화 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호수준의 강화 등 제도변경은 관련 산업의 비용증가(기술사용료 지출증가, 저작권료 지불증가 등)를 초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일정수준 상쇄될 것이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무역이 촉진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의 강화는 교역량 증대와 FDI 증대를 초래하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Global Copyright Protection



EU차원의 저작물 보호체계가 시사하는 전략적 대응점

김병일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서 언

우리나라는 아시아국가 중 처음으로 2007년 5월에 EU와 공식협상을 개시한 이래, 8차의 공식 협상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 한 후, 2009년 7월 13일 한-EU FTA협상을 종결하였다. 저작권 분야에 있어서 한-EU 간에 쟁점이 되었던 것은 저작권, 공연보상 청구권,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방송사업자의 권리 정도가 비교적 중요한 것이었는데, EU 측의 여러 요구 사항이 철회되거나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¹⁾ 지적재산권의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 집행수준이 강화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1) 한-EUFTA는 저작권 보호기간(기준: 50년)을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되, 이행할 협정 발효 후 2년간 유예하고 있고(제10.6조 및 제10.14조), 방송사업자에게 "TV 방송물을 상영하는 댓가로 입장료를 받는 행위"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제10.9조제5항), 권리자 추정 규정을 "방송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제10.53조). 또 한-EUFTA는 협정발효 후 2년 이내에 한국에서의 저작권 도입의 적절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제10.10조). 나아가 한-EUFTA는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 등의 제공 등의 행위 금지하고 있고(제10.12조),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뿐만 아니라 한-EU FTA 협상에 있어서도 지적재산권 집행 분야는 주요한 협상 의제 중의 하나였다. 한-미 FTA 협정문뿐만 아니라 한-EU FTA협정문도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담보하기 위한 조항들이 상당수 포함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럽의 지적재산법제는 내용적인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최근의 EU의 주요한 저작권 보호 정책 및 제도를 간단히 살펴보고, EU의 해외의 저작권 보호정책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다.

2. EU의 저작권제도

인터넷과 디지털 정보기술은 디지털화 된 형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정보회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저작권 분야는 단순히 국내법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사항도 포함하기 때문에 EU는 1995년 저작권적

보호의 입증하는 의미를 인식하고 정보회사의 저작권과 저작권접권에 관한 녹서(Grünbuch)²⁾를 준비하였다. 이는 전자우편, 월드와이드웹, 전자거래 시대에 상이한 국내 저작권 규정을 통하여 유럽 역내시장의 분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럽 수준의 통일적인 법적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자거래에 대한 유럽연합 지침³⁾이 공포되면서 저작권에 대하여도 저작권자가 권리자로서 누릴 보호 이익과 이용자를 고려한 보호, 양자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2001년 6월 22일 정보사회에 있어서 저작권 및 유사 보호권의 특정 관점의 조화를 위한 EU 저작권 지침(2001/29/EC)⁴⁾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그 이전에도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개별적 대상들에 대한 규율 원칙을 만들어 왔다. 예컨대,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는 1991년 5월 14일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⁵⁾에 따라 독일은 저작권법 제69조 a에서 제69조 g까지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정보 및 통신서비스법에서는 1996년 3월 11일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⁶⁾에 따라 1995년 10월 9일에 공포된 저작권법⁷⁾을 개정하였다.

한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08년 7월16일, 실연가와 실연기록의 권리보호기간을 실연으로부터 95년으로 연장(지금까지는 50년)을 유럽 의회 및 유럽이사회에 요청하는 권고와 연구·학술·교육을 위한 지식의 유통촉진에 대한 저작권의 역할에 관한 녹서(Green Paper on copyright in the knowledge economy)를 발표한다. 후자는 장기적인 저작권정책을 논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쟁점을 정리한 것인데, 도서관 등의 예외규정, 장해자의 이용, 연구·교육목적의 이용에 관련한 예외규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⁸⁾

EU의 지적재산권 집행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으로 EU 지적재산권 집행지침⁹⁾을 들 수 있는데, 이는 EU 회원국 내의 지적재산권 침해구제에 대한 통일을 목표로 한 것이다. 구성 및 내용에 있어 EU 지적재산권 집행지침은 전문¹⁰⁾ 32개조를 포함하여 총 5장 22

2) Grünbuch v. 19. Juli 1995, KOM (95) 382.

3) EU의 대내적 입법방식에는 5가지가 있으며, 지침은 EU가 규범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개별 국가가 구체적인 이행 입법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EU법의 각종 법원과 입법절차에 대해서는 Nigel Foster, Foster on EU Law (Oxford Univ. Press, 2006), pp. 81-122 참조.

4)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OJ, 22.6.2001, L 167/10.

5) Richtlinie 91/250/EWG des Rates v. 14. 5. 1991 über den Rechtsschutz von Computerprogrammen(ABl. EG Nr. L 122 v. 17. Mai 1991).

6) Richtlinie 96/9/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1. März 1996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Datenbanken(ABl. EG Nr. L 77 v. 27. März 1996).

7)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vom 22. Juli 1997(BGBl. I S. 1273).

8) The Commission adopted a Green Paper on copyright in the knowledge economy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copyright/copyright-info/copyright-info_en.htm#greenpaper\(2010.01.11\)](http://ec.europa.eu/internal_market/copyright/copyright-info/copyright-info_en.htm#greenpaper(2010.01.11))

9)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http://eur-lex.europa.eu/pri/en/oj/dat/2004/L_195/L_19520040602en00160025.pdf)(이하 'EU 지적재산권 집행지침'이라 함).

10) 이른바 Recital로서 지침의 입안 근거 및 목적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지침이 EU의 관할사항인지, 보충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가 되며, 지침 해석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침의 목적 및 범위, 증거수집 및 보존조치, 정보청구권, 잠정적 및 예방적 구제 조치, 본안판결에 의한 조치, 대체적 조치 등의 수단, 절차 및 구제조치,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한-EU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에서의 EU 측 요구안과 매우 유사하다.¹¹⁾

3. 유럽위원회의 제3국에서의 지적재산권 (IPR) 집행 전략¹²⁾

2004년 6월 23일, '유럽위원회 통상총국'은 제3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 전략에 관하여 폐이퍼를 발표하였다. 최근 지적재산권(IPR)의 침해가 광범위하고 산업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최저기준의 지적재산권을 실시하기 위한 법령이 대부분의 WTO 가맹국에서 채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 따라서 EU는 지적재산권의 집행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 실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전략의 타겟은 제3국의 상황개선에 기여하는

것에 있다. 이 전략은 EU 역내국가 집행법의 조화(harmonization)을 진행하는 집행지침과 EU 국경에서의 불법복제품 및 위조품에 대처하기 위한 신세관규칙의 제정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전략의 목적은 (i) 제3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대폭 감소하기 위한 유럽위원회의 각부서(DG)의 활동이 핵심이 되는 장기적 행동계획을 수립, (ii)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럽위원회의 각부서(DG)가 이용가능한 체제 정비, 그 우선순위의 확정 및 조정, (iii) 현시점에서 이용가능하고 실시할 수 있는 수단과 행동에 대해서 이해 관계자(지적재산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으로 자주적 활동에 참가하도록 의식을 제고함에 있다. 다만, 위원회는 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해결책을 제시, 추진하기 보다는 여러 방안 중 우선순위가 적절히 설정됨으로써 상대국에 따라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행하되, 지적재산권(IPR)의 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획일적인 접근방법(APPROACH)을 제안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원회 각 부서는 이해를 공유하며, 유사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노력한다.

이 전략은 제3국에서의 불법복제 및 위조상품 등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의 확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EC는 행동전략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행동전략으로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우선국의 결정 : 불법복제 및 위조상품 등의 원산국, 경유국을 정기적으로 평가, 진단.
- ② 다자간협정(TRIPS 협정, ACTA 포함), 양자간

11) EU가 한-EU FTA 협상 초기에 저작권법에 추급권을 도입하도록 한 것도 EU에서 추급권을 이미 추급권 지침(Resale Right Directive)에 의해 도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EU 추급권 지침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원오, "EU 및 그 주요 회원국의 추급권 입법 동향", 계간 저작권(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7.9), 23면 이하 참조.

12)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TRADE STRATEGY FOR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 Brussels, 23 June 2004(http://trade-info.cec.eu.int/doclib/docs/2004/july/tradoc_117828.pdf)

협정(FTA)을 통하여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집행체계 설정.

③ 정치적 대화를 통하여, 무역 상대방에게 지적재산권(IPR)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 제고. 미국·일본 선진국과의 협조, 공조의 실시

④ 기술협력 : 지적재산권(IPR)의 집행에 관한 사업을 기술협력 프로그램 진행. 미국·일본 선진국과의 원조중복을 피하기 위한 정보교환·대화를 유지.

⑤ 분쟁해결/제재 : TRIPS와 FTA에 위반한 경우, TBR 등의 분쟁해결체도를 활용.

⑥ 관민협력의 추진 : 제3국의 IP 네트워크를 지원 참가. 관민의 교류, 협력관계구축.

⑦ 계몽활동 : 불법복제 및 위조상품에 의한 경제손실, 건강피해와 조직범죄문제를 PR하고, 문제의식을 고양.

⑧ 유럽위원회 내의 협력 : 관련부국간의 정보교환, 제휴, 협력관계를 강화.

등의 불법유통과 도찰의 형사처벌, 직권형사조치 및 국경조치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문제도 'TRIPs plus'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서 대미, 대일, 대EU 관계에 있어서는 저작권 침해 국가임을 감안할 때 FTA가 미국과 EU가 의도하는 수준으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향후 의무 이행에 있어서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수준의 강화는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 등에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함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FTA 및 ACTA와 같은 국제적인 체계 강화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와 산업계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관련정보의 공유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중국, 태국 등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주요 국가에 대해서는 양국간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관·민 합동에 의한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에 대해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어

한미FTA뿐만 아니라 한-EU FTA는 TRIPs 협정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면서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하에 'TRIPs plus' 집행절차를 정립하고자 한다. 특히 민사집행범위의 확대, 손해배상액의 추정, 입증책임의 완화 및 법정손해배상제도 등은 민사집행분야에서 'TRIPs plus'라 볼 수 있고,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형사처벌, 위조 라벨

2011 SPECIAL EDITION

| GLOBAL COPYRIGHT | PROTECTION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COPYRIGHT PROTECTION CENTER

121-27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DMC단지 문화콘텐츠센터) 10층
Tel _1588-0190 Fax _02-3153-2708
www.cleancopyright.or.kr